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070-01

청렴^韓세상

회계부정 등으로 조성·은닉된 불법자금 근절방안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회계부정 등으로 조성·은닉된 불법자금 근절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7.

안진회계법인

목 차

1. 서 론	1
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나. 선행연구 검토	2
다. 연구 범위와 방법 및 한계	4
2. 비자금의 실태	5
가. 비자금의 의의	5
나. 비자금 조성	5
1) 조성 목적	5
2) 조성 유형	6
3) 조성 유형 분석 결과	10
4) 기타 특성	10
다. 비자금의 자금세탁	11
1) 자금세탁의 개념	11
2) 자금세탁의 유형	11
3) 자금세탁의 유형 분석 결과	13
라. 비자금의 사용	15
1) 비자금 사용 실태	15
마. 비자금과 처벌	16
1) 관련 법률	16
2) 처벌 사례	16
3) 현황 분석	17
바. 금융정보분석자료의 활용 실태	20
1) 의심보고거래건수의 증가	20
2) 의심거래보고의 분석 및 제공	20
3) 금융정보분석자료를 통한 자금세탁 적발 사례	21
사. 비자금 실태 조사 결과	25
3. 비자금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26
가. 연구 범위	26
나. 비자금 조성 단계 적용 시스템	27
1) 내부회계관리제도	27
2) 감사위원회제도	28
3)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30
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방지 제도	31
1) 자금세탁방지제도	31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35
3) 외국환거래관련 제도	35
4) 금융실명제	38
라. 기타 비자금 관련한 법률	39

1) 사후적 처벌과 관련	39
2) 자금세탁과 관련	40
3) 비자금 사용과 관련	43
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44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한 분석	45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45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45
사. 검토 결과	47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선 방안	47
2) 감사위원회 제도 관련 개선 방안	47
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48
4)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개선방안	48
5) 차명계좌 관리 및 처벌 방안 법제 보완	58
아. 소 결	59
4. 해외 비자금 방지 및 처벌 관련 시스템 사례	60
가. 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률 또는 제도 사례	60
1) 싱가포르	60
2) 홍콩	60
3) 말레이시아	60
4) 미국	60
5) 영국	60
6) 독일	61
7) 시사점	61
나. 해외 부패 방지 전담기구 사례	62
1) 싱가포르	62
2) 홍콩	63
3) 말레이시아	63
4) 미국	64
5) 영국	70
6) 독일	71
7) 프랑스	72
8) 시사점	73
다.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예방·적발 제도 운영 사례	74
1) 해외 비자금 조성 사례	74
2) 해외 비자금 예방·적발 제도 사례	75
3) 시사점	78
5. 국제 투명성 지수와 비자금	79
가. 국제 투명성 지수의 종류	79
1)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지수	79
2) BPI(Bribe Payers' Index) 뇌물공여지수	79

3)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세계부패바로미터	79
4) GI(Governance Index) 거버넌스 지수	79
나. 회계 투명성 지수와 국제투명성 지수	80
다. 국제 투명성 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	80
1) 부패와 밀접한 문화적 특징을 완화	80
2) 국제적 인식 변화	80
3)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협력	80
4) 기업에 대한 비자금 관련 처벌 규정 강화	81
5) 내부고발 장려 및 부패방지 홍보	81
6) 국민 인식의 변화	81
6. 결론	82
가.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82
1) 제도개선	82
2) 정책제언	83
나. 의식개선	85
<첨부자료 및 붙임>	86
<참고문헌>	125

<표 목 차>

<표 2-1> 국내 비자금 조성 유형화	6
<표 2-2> 비자금 조성 유형	10
<표 2-3> 업종별 비자금 조성 현황	10
<표 2-4> 비자금 사용처	15
<표 2-5> 비자금 처벌 사례	16
<표 2-6> 해외 처벌 사례	17
<표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별 형량비교	18
<표 2-8> 월별 의심거래보고 접수 건수	20
<표 2-9> 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현황	20
<표 3-1> 검토 대상 비자금 관련 법률 및 제도	26
<표 3-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	31
<표 3-3> 법령별 통관요건 위반 적발실적	37
<표 3-4>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법규정	40
<표 3-5> 자금세탁과 관련한 법규정	42
<표 3-6>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법규정	43
<표 3-7>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한 분석	46
<표 3-8> 의심거래보고, 상세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현황	49
<표 3-9>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현황	52
<표 3-10> 2010년 8월말 기준 의심거래 건수	53
<표 3-11>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증권사 비중	53
<표 3-12> 주요 사건의 자산은닉 형태	54
<표 4-1> 미국 부패방지 기관 비교	70
<표 4-2> 해외 비자금 조성 사례	74

<그 립 목 차>

<그림 3-1>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운영체계	33
<그림 3-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관련 기관	34
<그림 3-3> 은닉(stock) 상태의 비자금 모니터링	55
<그림 4-1> 윤리국(OGE) 조직도	65
<그림 4-2> 감찰국(OIG) 조직도	67
<그림 4-3> 특별검사청(OSC) 조직도	68
<그림 4-4> 국무부 조직도	69

1. 서 론

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업 비자금 관련 기사는 심심치 않게 신문에 등장한다. 이렇듯 현 사회에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슈이다. 비자금 조성의 문제점은 기업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특정 인물이 횡령하면서 기업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비자금은 탈세의 원흉으로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을 특정 인물들이 가로채게 된다. 이러한 비자금 조성 방식은 검찰 수사기법의 첨단화와 더불어 차명계좌, 계좌 쪼개기, 역외탈세 등 갈수록 정교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인 경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추징금 등이 부과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처벌 및 추징금부과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에 비자금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 조성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보완될 수 있다면 비자금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축소하여 비자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①비자금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②현행 법률 및 제도가 비자금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 지 살펴본 후 ③비자금 조성·은닉·사용 등 일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나. 선행연구 검토

1) 비자금 조성에 관한 선행연구

비자금의 조성에서 사용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그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지만 기업범죄의 한 유형임에는 틀림없다.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기업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 목적상 각종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기업범죄의 한 유형이다. 기업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유병규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간 대립을 야기하는 사항과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통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항과 관련한 범죄(예를 들어 분식회계를 통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선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고 한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기업의 이익 창출을 극대화 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경영진은 내·외부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기업 내부와 외부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내부 장치로는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활성화, 주주 대표소송, 주주 집단소송 등이 있고, 외부 장치로는 기업 회계기준의 선진화,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기업범죄 대응 수사체계 개선, 기업범죄 수익의 철저한 몰수·추징 등을 들 수 있다.

나) 기업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

이천현은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페이퍼컴페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상 거래, 선적서류 위조를 통한 무역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 유형이며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분식회계 또한 199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그 외에 유사 수신행위를 통한 범죄, 공공자금과 관련한 범죄,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범죄 등 다양한 기업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신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및 경제전담부서의 신설, 경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수집활동의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다)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

유병규는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기업 비자금 등 불법자금을 추적하는데 용이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하며 또한 기업범죄는 기업 내부자의 제보나 도움 없이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협력형 형사면책특권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업범죄수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업범죄자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으로 몰수기금을 만드는 방안 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제재방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금액의 효과성 측면에서 선진 각국에 도입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강제적 자주규제’, ‘간접행위자의 처벌’, ‘주식벌금제’,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등 새로운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 자금세탁에 관한 선행연구

김혜정은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계”(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자금세탁방지는 혐의거래보고, 고액거래보고, 고객주의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비밀의 보호와 그 법익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비밀을 보호하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공에 있어 오·남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비밀유지의무가 필요하며 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혐의거래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3) 선행연구 효과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고안되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한 제도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도입되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고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내부감시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범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그와 같은 결과로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활성화, 주주 대표소송, 주주 집단소송,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다. 연구 범위와 방법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자금 사례를 수집하여 비자금의 조성에서 자금세탁과 사용, 그리고 처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자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비자금 조성에서 처벌까지의 관련된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도식화하여 현행 제도가 비자금 조성 행위 방지를 위하여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자금 사례 수집은 법원의 판결 사례를 주로 이용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비자금 유형과 처벌 유형 및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실태 및 한계점 파악을 위해서 금융정보 분석원과 금융기관의 실무자와 면담을 통하여 운영 실태 및 한계점에 대한 현업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사자료의 완전성이나 점검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 투명성 지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부정 등의 불법 자금이 국제 투명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 비자금 방지 관련 법률과 전담기구 등을 소개하여 국내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비자금의 실태

가. 비자금의 의의

일반적으로 비자금이란 법인의 회계장부 상에 올라 있는 법인의 공적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 비자금 조성은 회계 장부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의 재무제표는 왜곡표시되고, 법인에게 귀속될 자원이 법인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법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인식하거나 수익을 누락함으로써 순이익을 과소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의 포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비자금 조성

1) 조성 목적

비자금은 개인적인 유용을 위하여 탈세가 수반되는 불법행위를 통하여 조성하거나 기업이 거래처의 획득 또는 기타 기업 영리활동을 위한 로비자금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우 등으로 그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가) 개인적인 유용

우리가 조사한 비자금 조성 사례 중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녀유학비, 개인 채무의 변제,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 로비활동 목적

사업 인·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비자금이 사용된다.

다) 회사 운영상의 목적

협력업체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접대비, 리베이트 자금 마련, 미납 조세나 추후 발생할 조세부담에 대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1) 서명수, 법인의 비자금과 횡령죄, 형사재판의 제문제 : 송계 신성택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형사실무연구회, 1998, 10면중 4면.

2) 조성 유형

비자금의 조성은 조성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행위를 하는지 또는 조성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조성방법은 비슷하며, 수익을 누락하거나 차입 등으로 인해 유입될 자원을 횡령하고 장부에도 차입금 기록을 누락하는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방법 또는 가공의 대여금 등과 같은 자산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원을 유출하는 수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리베이트나 커미션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역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자본의 누락수법이거나 비용 또는 자산의 과대 인식의 수법으로 분류 가능하다.

<표 2-1> 국내 비자금 조성 유형화

구분	세부 항목			당사자	
				단독 조성	조력자 도움
장부조작	가공 항목 계상	비용 성격	급여	●	
			운반비		
			외주가공비		
		자산 성격	대여금		
	회원권				
	항목의 누락	수익 성격	매출		
현금입금(카지노)					
부산물 매출					
비용 과대계상	급여성 비용			●	
	기타 비용(연구개발비 등)				
	매입대금(중장기, 공사비 등)				
리베이트	항목의 누락	수익금액		●	
커미션	항목의 누락	수익금액		●	

가) 당사자 단독으로 비자금 조성

비자금 조성에 있어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함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라는 의미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계획, 지시, 행동을 하는 개인이 1인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 당해 법인과 상대방 법인 간 또는 당해 법인과 상대방 개인 간 거래 관계에 있어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도를 가진 당해 법인이 그 의도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지배회사와 또는 관계회사와 당해 회사와의 거래는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단독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 사례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그 사례를 가공비용 계상, 수익 금액 누락과 가공 대여금 계상 및 투자금 횡령 수법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 가공비용 계상

가공 급여 지급 유형은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출된 급여가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는 수법이다.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합454 판결

8명의 위장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13,173,490원을 허위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법으로 이를 빼돌린 다음 그 무렵 피고인 한모씨의 개인 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2004.08.05경부터 2010.06.04경까지 합계 307,215,720원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함.

(나) 수익 금액 누락

수익 금액 누락 유형은 카지노 영업수입 등 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누락하여 그 금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회계장부에는 그 수익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는 수법이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7노554 판결

카지노의 영업수입이 많은 날을 택하여 몰래 수납실에 들어가 수납직원이 수거하여 둔 드롭박스를 열고 수표 뭉치를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한편, 나머지 현금과 수표만으로 그 날의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근거 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한 다음 소득액을 허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함.

(다) 가공의 대여금 계상

가공의 대여금 계상 유형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면서 장부상에는 대여금으로 기록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06나7229

피고가 1997년도에 지출된 소외 2의 비자금과 사업상 지출된 비자금의 정리 및 소외 2 개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무단 횡령한 후, 이와 같이 횡령한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7. 3. 28.부터 1997. 12. 24.까지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하계 1차 주택조합에 사업비 84억 16,158,948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가 소외 2 회장 개인의 가지급금 정리, 흥은동 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비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목적으로 차입한 사채의 변제 등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이와 같이 횡령한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7. 12. 9.부터 1998. 5. 26.까지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흥은동 주택조합에 사업비 83억 3,700만원 상당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함.

(라) 투자금 횡령 수법

이 유형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등을 유출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그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에 관한 기록을 누락하는 수법이다.

삼부파이낸스 양XX 사건

투자금의 일정부분을 법인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차명계좌로 별도 관리하는 등 고객들의 투자금을 함부로 전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함.

나) 조력자의 도움을 통한 비자금 조성

비자금 조성에 있어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조성 당사자가 조력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매입대금 지급 시 실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에 조력자가 당사자에게 실제 매입대금과의 차이를 되돌려주는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이다.

(1) 조력자 도움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 사례

(가) 구매가액 부풀리기 수법

이 유형은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자금 계좌로 반환받거나 직접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이며, 비용과대 계상의 성격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06노215 판결

실제의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명목상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단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1,166,385,260원 상당의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합 금고에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하면서 은밀히 사용함.

(나) 리베이트 수령 후 기입 누락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거래 조건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되돌려 받는 금액은 원래 법인에 귀속될 자원인데 이 금액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수법이다. 리베이트 수령자 입장에서는 리베이트가 구매대금의 차감 성격이므로 리베이트 수령에 관한 회계처리 누락은 비용을 과다 인식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합213 판결

피고인 XX호는 ZZ텔레콤과 경쟁관계에 있는 YY사의 대표이사 장XX에게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납품업체 선정 시 납품 물량을 많이 줄 테니 납품하는 단말기 1세트당 환율에 따라 400원~500원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함. 그 후 XX호는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83억 원 상당의 단말기 등을 납품하였고 임가공비 명목으로 약 94억 원 상당을 교부받음. 그 후 총 15회에 걸쳐 284,958,100원을 최XX의 계좌로 송금 받아 최XX에 대한 개인채무 1억 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이 유형은 조력자와 합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추후 약속된 비자금 계좌에 대금을 반환 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취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구매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법인의 자원이 유출되고 인식하지 않아도 될 매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비용을 과다하게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번호 2010고합50 판결

조모씨, 박모씨가 공모하여 거래업체인 'XXXX'에 공급가액 33,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 금원을 주식회사 XX의 매출원가로 허위 신고하여 비용을 과대계상 혹은 허위계상 하되, 33,000,000원을 XXXX에 송금하여 준 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을 고XX 명의의 XX은행 계좌로 재송금 받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6,473,807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3) 조성 유형 분석 결과

상기 조성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금의 조성은 법인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합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2-2> 비자금 조성 유형

단독 조성	조력자 이용	합계
61	73건	134
45%	55%	100%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범죄사실 등을 토대로 유형별 발생 빈도를 비교해본 결과 119건의 사건에서 134개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발견하였고, 134개의 조성 중 61건은 단독으로 조성된 사례이고 73건은 조력자를 통해 조성된 사례였다. 비율로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약 55% 정도를 차지하여 비자금 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 조력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조력자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 경우, 비자금 조성 과정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 외부의 조력자인 거래 상대방 법인 또는 개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는 조력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제도 개선 방안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기타 특성

기타의 사항으로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업종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비자금조성의 업종별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업종별 비자금 조성 현황>

업종	조성사례	백분율(%)
서비스	25	27%
공공기관	5	5%
건설, 설비	29	32%
금융투자 및 보험	4	4%
기술개발	2	2%
언론	1	1%
제조	19	21%
조합(협회)	6	8%
합계	91	100%

(※ 조사사례 중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건만 분석하였음.)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가공의 근로자를 통한 임금계상이나 도급금액 조작의 유형으로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일용직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현금보유 비중이 높고 기본적으로 그 규모가 한 번의 조작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요구되는 증빙이 타 업종에 비해 적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여부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특징적이다.

다. 비자금의 자금세탁

1) 자금세탁의 개념

자금세탁은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최초로 정의 되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중 어느 하나로 정의된다.²⁾

한편, 국내법에서는 자금세탁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는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조세포탈 및 관세포탈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자금세탁의 유형

자금세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거래관계의 위장을

2)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10. 1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8면.

통해 적법한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비자금 조성으로 형성된 자금을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산으로 위장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전환과정에 사용되는 자산의 성격이 고도의 익명성과 현금으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을 지닐수록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거래관계의 위장

거래관계의 위장의 경우,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적법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전위회사(front company)³⁾나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사례1) 유령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고 다른 유령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별첨 붙임1 참조)

(사례 2) 유령회사가 항공기를 금융리스 형태로 대한항공에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유령회사가 항공기를 구입할 때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를 유령회사의 항공기 구입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통해 리베이트 수령액만큼 외화가 유령회사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별첨 붙임2 참조)

나) 자산 전환을 통한 자금세탁

자산 전환을 통한 자금세탁은 비자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현금 등을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전환하면서 그 출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유형이다. 보통 비자금은 현금으로 조성이 되어 자금세탁의 수단이 되는 자산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금으로 조성되어 전환과정이 없이 바로 현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1) 동산·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고가의 보석류, 귀금속 등은 보관에 있어 현금보다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동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차량, 선박 등은 상대적으로 덜 이용되게 마련이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국내 부동산에 비자금을 은닉하는 경우 보다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부동산에 은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에는 고가의 미술품을

3) 불법적인 거래 등을 위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회사이다.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술품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도의 익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미술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금액의 추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2013년까지 개인 간 미술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⁴⁾ 상속과 증여의 수단 또는 비자금 조성 및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2) 채권(債權)자산을 이용한 비자금 세탁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에 대한 약속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이 채권에 포함되는 물론이고 수표, 예금 등도 채권의 일종이다.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등에 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자금의 소유주를 위장하고 현금의 물리적 보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현금화하는데 별다른 거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소재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해외 계좌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계좌를 통한 외환거래가 없을 경우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계좌로 송금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외환업무 취급자를 통해 송금을 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도 한다. 무기명채권의 경우 역시 자금세탁으로 사용될 요인이 높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3) 자금세탁의 유형 분석 결과

가) 조사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한 119건의 판례 중 자금의 세탁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은 65건 정도였다. 그 중에서 16건은 비자금을 금고 등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43건은 차명예금, 차명주식 등을 이용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차명예금의 사용이 더 빈도가 높았는데 주식의 경우보다 보통예금 등의 경우가 현금화 하는데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외 역외 금융자산 이용이 4건, 부동산 이용이 2건 이었다.

4) 미술품 과세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으나, 2008년, 작고작가의 작품에 한하여 6000만원이 넘게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대상과세물건을 '대폭 축소', 다시 입법이 추진되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2011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술계의 반발을 등에 업고 과세유예 법안이 다시 제출되어, 논쟁 끝에 다시 제도 시행이 2년 더 유예된 상황이다.

나) 거래관계 위장에 대한 분석

비자금 자금세탁의 유형 중 거래관계 위장을 통한 수법은 유령회사, 전위회사, 계열사 등을 이용한 수법인데 통상적인 업무 관계로 위장하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주의로는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된 자회사 등과의 거래는 높은 수준의 주의를 통해 감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 자금세탁 수단이 되는 자산에 대한 분석

비자금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여 은닉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 전환되는 자산의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더 많이 선호되고, 현금화하는데 거래 단계가 단순하고 그 비용이 크지 않을수록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해외 소재 자산일 경우 비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찾은 사례 중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비자금을 은닉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보통예금 등에 비해 현금화하는데 거래 비용이 커서 그 사례가 적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2013년까지는 개인 간 미술품 양도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파악이 쉽지 않고 미술품의 거래 가격은 당사자들의 기록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분석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사례이다. 현재 제도에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은행이나 은행 직원이 처벌 대상이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차명계좌는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에 동조한 개인들에 대한 제재 규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비자금 사용

비자금의 사용은 비자금의 조성 목적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 비자금 사용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와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한 방법으로 각종 이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로비활동을 위한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판결 사례를 기준으로 비자금의 사용 유형을 개인적인 유용, 로비활동을 위한 사용, 기타 업무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분류하여 해당 건수를 집계하였다.

1) 비자금 사용 실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유형은 개인적인 사용이었고,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하여 뇌물공여 등의 죄목으로 처벌된 건과 기타 업무 목적을 위해 사용한 건이 각각 26건이었다. 기타 업무 목적을 위해 비자금을 횡령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처벌됨을 확인하였고 업무 목적을 위한 비자금 조성이 의외로 1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대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경우의 비자금 사용처는 단순 개인적 유용 보다는 로비활동이나 기타 업무목적을 위한 경우가 많다.

<표 2-4> 비자금 사용처

개인적인 유용	로비활동을 위한 사용	기타 업무 목적	합 계
95건	26건	26건	147건
64%	18%	18%	100%

마. 비자금과 처벌

1) 관련 법률

비자금을 조성함에 따라 세금의 포탈, 법인 자원의 유출,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및 허위 공시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비자금 조성과 은닉 및 사용과 관련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죄목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비자금 관련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은닉,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등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2) 처벌 사례

다음은 국내 비자금 사건 보도기사와 실명확인이 가능한 판례 등을 통해 대기업 위주로 수집한 비자금 처벌 사례이며, 당해 사례에서 기사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죄목은 대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죄였다.

<표 2-5> 비자금 처벌 사례

기업명	피고인	횡령액	확정판결일	확정판결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	1153억	2008. 6.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현대중공업	정주영	667억원	1994. 7.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쌍용건설	김석준	80억	2006. 12.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외환은행	이강원	4억여원	2010. 10.	징역1년6월, 추징금 1억5천만원
삼성화재	황태선	9억 8천만원	2009. 6.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주)기산	이신행	183억원	1999. 10.	징역 3년, 추징금 2억5천만원
두산그룹	박용오	297억3천여만원	2007.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극동그룹	김용산	1221억	2006. 6.	징역4년
농협	원철희	6억원	2003. 4.	징역 1년6월, 징유 2년
농협	정대근	100억원대	2007. 11.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
부영	이중근	270억원	2010. 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 선고유예
광영토건	이남형	270억원	2010. 3.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

기업명	피고인	횡령액	확정판결일	확정판결
대상그룹	임창욱	219억 6천만원	2005. 6.	징역 3년
뉴코아	김의철	1억 5천여만원	2002. 2.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원
마사회	윤영호	1500만원	2006. 3.	징역2년6개월, 추징금1억3천500만원
대한항공	조양호	1161억원	2000. 6.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롯데건설	임승남	43억원	2004. 7.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선고유예
대우그룹	김우중	20조원	2006. 5.	징역 8년 6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

3) 현황 분석

가) 집행유예 판결 비중

18건의 조사 사례 중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건이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61%를 차지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유는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이 법인의 업무 목적을 위한 경우, 피고인이 경제에 기여한 영향,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등의 사유로 인함이다. 각 사안별로 정상 참작은 고려하여야겠지만 집행유예나 특별 사면 등으로 인해 사실상 형벌을 충분히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우가 형량의 감경요소로 언급되어 있어서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사례도 많은 게 현실이다.

나) 형량비교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비자금사건 처벌 형량과 외국의 경제범처벌의 형량을 비교해보면 단순하게 횡령금액 1천억 원 대의 현대기아자동차와 극동그룹 및 대한항공의 경우 우리나라는 3년~4년 정도의 형량이지만 미국의 엔론사와 타이코의 경우 24년~25년의 형량을 보이고 있다.

<표 2-6> 해외 처벌 사례

기업명	피고인	횡령액	확정판결
엔론사	제프리 스킨링	약 1천억원	24년 4월 실형
월드콤	버나드 에버스	수천억원	25년 실형
타이코	데니스 코즐로스키	약 1500억원	25년 실형
나스닥 증권거래소	매도프	약 6천억원 횡령	150년 실형

다) 처벌 분석 결과

비자금이 적발되어 처벌할 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등이 가중요소로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자금 사례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보다 그 형량이 적게 처벌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비자금은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법을 적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비교

<표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별 형량비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구분	내용	형량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①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도피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 (수재등의 죄)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구 분	내 용	형 량
제6조 (증재등의 죄)	제6조 (증재등의 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사금융알선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금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이라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특경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에는 도피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5조(수재 등의 죄)에서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 금융정보분석자료의 활용 실태

1) 의심보고거래건수의 증가⁵⁾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09년 말까지 총 325,156건의 의심거래보고가 접수되었다. 2002년 275건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52,474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92,093건, 2009년에는 136,282건의 의심거래보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2008년의 의심거래보고건수 92,093건에 비하여 약 1.48배 증가한 것으로 월평균 11,356건이 접수되었다.

<표 2-8> 월별 의심거래보고 접수 건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75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1,744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4,680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2006	1,945	2,014	1,513	1,53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129
20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35	52,474
2008	6,745	6,780	8,179	7,867	7,020	7,421	8,187	7,553	7,360	8,668	9,352	6,961	92,093
2009	11,164	7,655	8,136	11,221	10,040	12,087	14,297	11,024	12,153	11,962	11,556	14,987	136,282
계	23,825	20,370	23,284	26,248	24,678	27,264	30,216	27,483	27,676	29,361	32,363	32,368	325,136

2) 의심거래보고의 분석 및 제공⁶⁾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09년 말까지 총 323,064건의 의심거래보고의 심사 분석(기초분석 273,319건, 상세분석 49,745건)을 완료하고, 이 가운데 20,873건의 의심거래정보의 분석결과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6개)에 제공하였다.

<표 2-9> 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현황

연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합계
2004이전	655	308	245	286	27	10	1,531
2005	593	292	313	570	31	0	1,799
2006	534	612	413	657	50	1	2,267
2007	561	607	490	629	44	0	2,331
2008	763	1,354	2,215	884	18	0	5,234
2009	986	2,105	3,836	745	39	0	7,711
합계	4,092	5,278	7,512	3,771	209	11	20,873

5)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10. 1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64면.

6)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10. 1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71면.

3) 금융정보분석자료를 통한 자금세탁 적발 사례

(사례1) 카지노직원 횡령사건

① 적발 경로

㉠ 금융회사의 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회사자금 횡령자의 지인)가 1억원, 1천만원권 등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점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다.

㉡ 금융정보자료 분석

자료 분석 결과 고액의 자금을 여러 차례 수표발행과 현금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두 현금화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범죄자금을 자금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② 조사 결과

카지노 환전팀에서 카지노 손님들이 게임을 위하여 환전한 현금과 수표 등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권 등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바꾸니 또는 속옷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절취하고, 이를 동생, 남자친구, 어머니 또는 제 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회사자금을 횡령한 본인은 횡령 및 자금세탁 죄로 징역 8년, 다른 2인은 자금세탁 죄로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재무담당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파생상품투자 손실

① 적발 경로

㉠ 금융회사의 보고

중소기업의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령, 직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의 자금을 거래하고 있고, 회사발행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거액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이에 회사자금 횡령 가능성 등 자금세탁으로 의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었다.

㉠ 금융정보자료 분석

분석 결과 법인이 회사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재무팀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선물옵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재무팀 직원이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 목적의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여러 은행을 거쳐 법인자금을 현금 및 수표로 교환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점을 통해 자금세탁으로 판단하였다.

② 조사 결과

기업 재무담당자가 2년 6개월간 재무팀에서 법인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외환 매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8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례3) 증권회사 직원 공모에 의한 장외시장(제3시장) 거래 기업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발행자금 횡령 사건

① 적발 경로

㉠ 금융회사의 보고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 한도를 20억 원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거래한도가 과다하고 통장 개설 직후 거액이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거래패턴이 아니므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다.

㉠ 금융정보자료 분석

대표이사는 과거 범죄경력이 다수 있고, 외형이 작은 중소기업임에도 거액의 사채를 발행하고 과도한 인터넷뱅킹 거래한도 설정을 요구한 점과 사채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통해 회사자금 횡령과 동시에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았다.

② 조사 결과

장외시장에 주식거래를 신청한 법인 대표자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54억 원을 조성하고 그 중 30억 원을 가족, 회사 관리부장 등 다수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사채발행 업무를 처리해 준 증권회사 임원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혐의자 2명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례4) 법인 주식담보대출자금 횡령 및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① 적발 경로

㉠ 금융회사의 보고

수소자동차 관련 테마주를 형성하여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고한 후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반면, 대출금 상환대금은 대표자 소유의 다른 기업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일 날짜에 관련 기업 주요 경영진 명의의 계좌가 여러 개 개설되어 자금이체 등에 사용되었고 담보대출과 입출금거래의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였다.

㉡ 금융정보자료 분석

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하여 내부자거래 또는 주가조작 혐의가 높았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현금화하고 이를 현금 및 타행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법인자금의 횡령,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조성하고 이를 자금세탁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② 조사 결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1,172억 원을 횡령하였고, 주가의 인위적 부양과 처분을 통해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되고 대표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례5) 스편 메일을 이용한 해외 거액 복권당첨 사기사건

① 적발 경로

㉠ 금융회사의 보고

혐의자는 평소 은행거래가 없었으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해외복권 당첨금 수령을 위해 세금 등의 비용을 송금한다.”고 하면서 16명의 명의로 167회에 걸쳐 10만불 상당을 송금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다.

㉠ 금융정보자료 분석

혐의자가 해외복권 당첨금을 진실로 믿고 송금한 자들에게 당첨금을 1년 이상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송금한 대상국가가 자금세탁이 쉬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며, 해외에서 계좌 없이 신속하게 수취할 수 있는 머니그램을 송금처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외 조직과 공모한 복권 사기사건으로 파악하였다.

㉡ 조사 결과

혐의자는 12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만불 이하의 소액으로 분할하여 199회에 걸쳐 53만 8천불을 송금하였다. 이 중 총 1억 7천만 원을 입금한 3명의 입금자는 복권당첨금 사기에 속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입금자는 여전히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 혐의자에 대해 1억 7천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사. 비자금 실태 조사 결과

비자금의 실태 조사 결과 조력자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조사사례의 절반 이상임을 보여주었고 건설업종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경우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금 세탁 측면에서는 차명예금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명회사·전위회사 등을 이용한 거래관계 위장을 통한 자금 세탁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금의 조성은 회계장부의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내부 감시시스템 감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조력자를 통한 조성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력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는 거래위주의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나 은닉·보관 중인 비자금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비자금의 사용에 따른 처벌을 해외사례와 다른 경제사범의 형량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비자금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에 비해 형량의 적용이 가벼워 보이는 게 현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용하는 경우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하여 현행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자금세탁 측면에서는 자금 세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의 여러 제도를 살펴본 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비자금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가. 연구 범위

비자금의 구성과 세탁 및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 형법에서 정치자금법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각 단계별 유사한 행위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형법이나 상법 등은 비자금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행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일반 법률과 제도를 다루기보다는 비자금의 구성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각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 또는 비자금 조성 행위 등의 적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표 3-1> 검토 대상 비자금 관련 법률 및 제도

소관부처	법률	제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신고제 등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처벌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투법')	상장법인 공시제도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혐의거래보고제 등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몰수제 등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도피자 처벌

나. 비자금 조성 단계 적용 시스템

외감법 적용 대상인 주식회사⁷⁾가 상시적 운영 책임이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에 의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업무는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거래 및 회계기록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하여 비자금 조성 과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자금 조성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로 외감법 상 회계 관련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비자금 자금 조성에 대한 사후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포탈, 횡령·배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으로 언급되어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근거 법률

내부회계제도와 관련한 법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규정한 11개 금융관련법⁸⁾이 있다.

나) 내 용

주식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⁹⁾ 대표이사는 상근이사 1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를 책임지도록 지정해야하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한다.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한다.

다) 의의 및 한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요구에 따라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시기 이후 정부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상장기업의 분기 재무제표 공시, 감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구조조정촉진법」

7) 주권상장법인인 아닌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8)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 법, 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등11개법률

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참조

(이하 ‘구축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2001년 구축법에 의해 처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거쳐 현재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완료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짧고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도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했으며 제도시행이 본격화 되는 현재까지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효익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이세철(2008)의 연구에서 회계이익이 기업의 당기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를 의미하는 가치관련성 부분에서 내부회계가 취약하다고 보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복숙(2009)의 연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 구성과 운용 면에 있어서 점차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코스피시장의 경우 효율적인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기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시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제도의 효익과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손일목(2009)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적인 판단이 회계투명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을 밝혔다.

2) 감사위원회제도

가) 근거 법률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¹⁰⁾, 「은행법」 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자투법」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보험업법」 제16조(감사위원회) 등

나) 내용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이고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의 경우 자투법에 따라 2조원

10)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등: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2011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 상법 시행령 제 16조)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인 경우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각종 금융기관들의 경우 역시 해당 법률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각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상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며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재무제표의 승인여부를 이사회에 권고, 기업의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과의 관계를 감시 및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건의서한(management letter)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 의의 및 한계

감사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감시기구로 최근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견 교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감시활동을 통하여 재무보고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한국회계연구원2000). 기존에 존재하였던 감사 제도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 또는 소유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 부재, 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 미흡,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실무적인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복숙(2009)의 연구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감사위원회제도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는 일관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고 언급하였으나 그러한 결과가 평균적인 결과일 뿐이지 개별기업에 있어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면서 제도의 보완 등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제도로 작동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첫째는 대주주 및 소유경영진의 회사 내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선·해임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 둘째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아직 미약하다는 점. 셋째는 감사위원의 보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감사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가) 근거 법률

「외감법」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¹¹⁾

나) 내 용

(1)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징계·시정조치의 완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¹²⁾

(2)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 등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¹³⁾

다) 의의 및 한계

외감법 상 신고자 보호 제도는 회계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기타 민간 기관에 대한 내부자 신고와 관련하여 내부제보자 보호제도는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¹⁴⁾

11) 외감법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 회계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외감법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상법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항 참조

13) 상법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3항 및 제5항 참조

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방지 제도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를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 등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제도를 자금세탁방지제도라 한다.

1) 자금세탁방지제도

가) 근거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나) 내 용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주의의무제도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각 제도별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내용

구 분	혐의(의심)거래보고제	고액현금거래보고제	고객주의의무
내용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 ¹⁵⁾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보완하여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실명확인(성명과 실지명 확인)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14)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령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법의 시행은 2011.9.30부터이므로 동 법이 비자금 조성 행위 등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그 실효성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15)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10. 1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10면.

구 분	혐의(의심)거래보고제	고액현금거래보고제	고객주의의무
<p>의의 및 한계</p>	<p>1) 혐의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음.</p> <p>2) 혐의거래보고 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규정한 조항¹⁶⁾은 금융거래 특히 국제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경험상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임.¹⁷⁾</p> <p>3) 혐의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을 것이며, 허위보고로 판단되면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제14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융거래는 비록 혐의가 느껴져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¹⁸⁾</p> <p>4) 거래 시 의심거래에 대한 혐의를 적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휴면계좌 등에 은닉되어 있는 자산의 적발은 미비하다는 점</p>	<p>1)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 예를 들면, 외국통화, 전자화폐, 수표, 어음, 상품교환권, 복권(당첨된 복권)등¹⁹⁾</p> <p>2) 거래유형을 “지급 또는 영수”로 제한하고 있음.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이 이루어지는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 금융 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¹⁹⁾</p>	<p>1)고객확인제의 실행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조회한 결과 신원에 확인·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²⁰⁾</p> <p>2)현행법 상 고객확인제도는 각 금융기관에게 직접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금융기관 자체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간접강제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FATF²¹⁾의 권고나 미국 은행비밀법에 근거한 연방 규칙상의 직접의무규정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²²⁾</p>

1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제3항

17) 이동수,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1집, 2010. 11., 293면 참조

18) 이동수, 전게서, 29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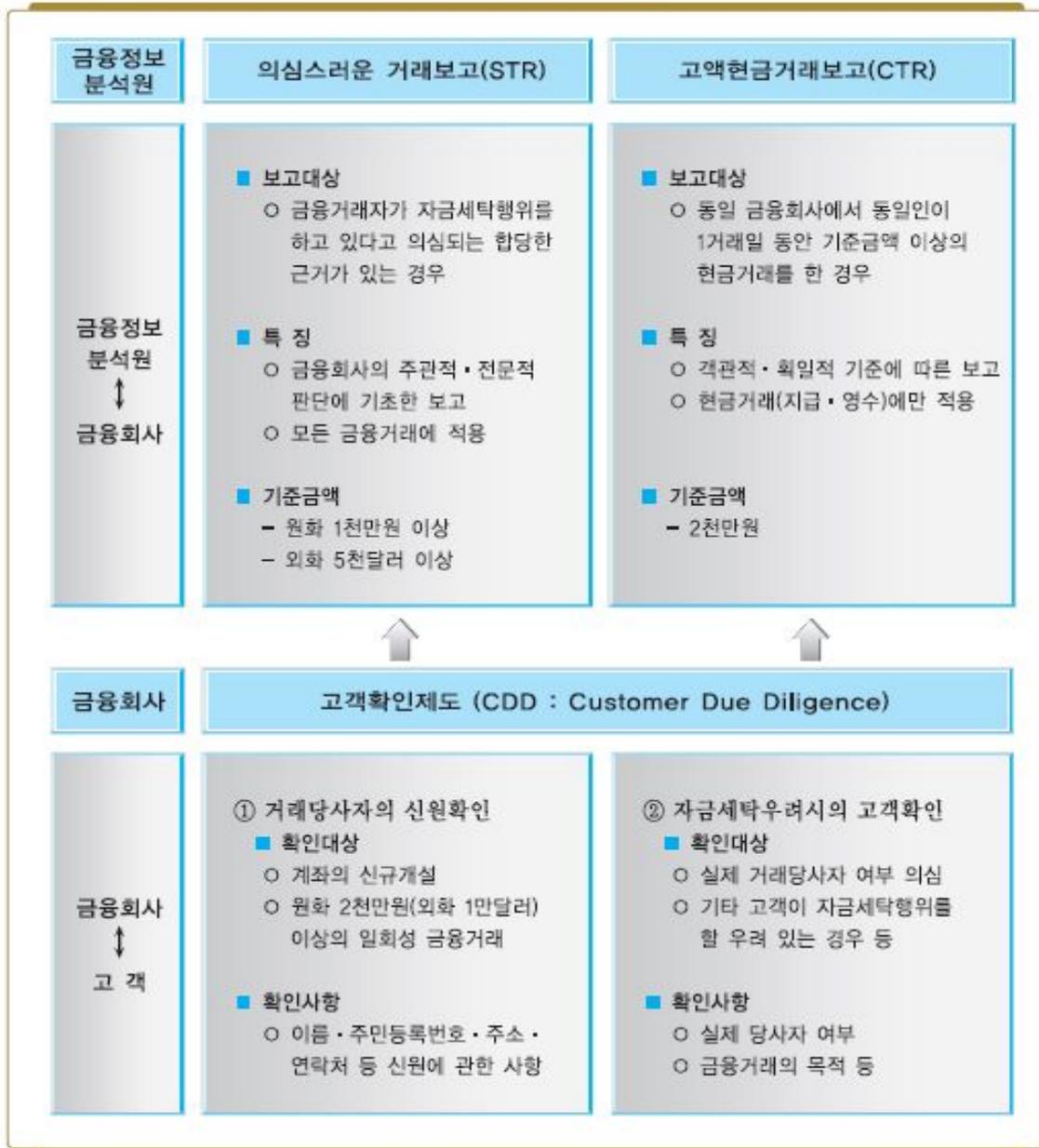
19) 이동수, 전게서, 296면.

20) 이동수, 전게서, 299면

21) 자금세탁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대책기구로서 1989년 7월 G-7 정상회담의 결의로 성립된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 전담반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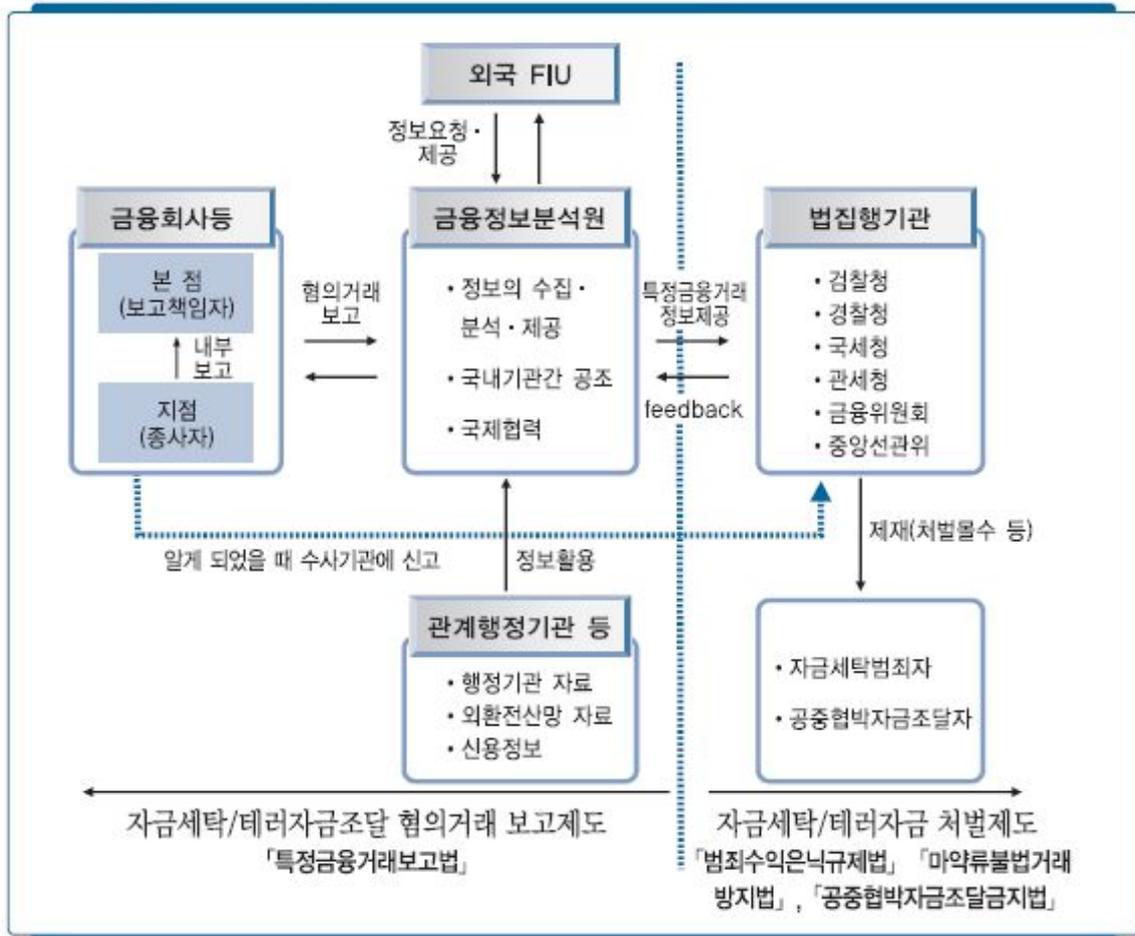
22) 이동수, 전게서, 299면

<그림 3-1>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운영체계²³⁾



23)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10. 1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14면.

<그림 3-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관련 기관²⁴⁾



다) 제도 분석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거래 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원화거래 1천만원,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는 미화 환산 5천불 상당액)와 금액 기준 회피 목적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위의 사례들을 볼 때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임을 판단하는 것은 자금세탁혐의자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예상 가능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여 그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이 혐의자(자금세탁관련한 모든 혐의자를 말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이다. 또한 평소 금융기관 거래를 하지 않던 자가 잦은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합해보면 혐의자가 당시의 상태와 거래패턴에 맞지 않는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체계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가 혐의거래를 고의로 눈감아 주거나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혐의자의 상태와 거래패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래를

24) 자금세탁방지 2008년도 연차보고서, 2009. 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11면.

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의 요소를 정비하여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발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자금세탁에 본인의 계좌 뿐 아니라 가족 및 친인척의 계좌도 자주 사용되므로 가족의 상태와 소득규모 및 거래패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가) 근거 법률

「국세조세조정법」 제31조의2, 제34조~제36조

나) 내 용

거주가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 대상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적용한 처음 신고는 2011년 6월이다.

다) 의의 및 한계

해외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세원기반을 확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3) 외국환거래관련 제도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규모는 일평균 419억달러에 이르고, 이 중 경상거래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으로 인한 유출입을 포함한 현물환거래만도 일평균 16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국제화와 외환자유화 등에 힘입은 외환거래 증가는 비자금의 조성, 은닉처로서 국경 밖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자금의 은닉형태로서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를 증가시키고 있다. 비자금이 조성되어 역외로 유출되거나, 역외에서 조성되어 유출되는 경우, 국제결제통화가 아닌 원화를 외국환의 형태로 바꾸거나 그 외환을 반입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제도가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이다.

가) 근거 법률

「외국환거래법」

나) 내 용

(1) 현행법규 및 제도체계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본 법규로 외국환거래법과 그 하부 규정 등이 있으며, 외국환관련 기타법규로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 등이 있다.

또한, 현제도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의무제,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OECD가입과 외국환관련 규제 변화

과거의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이며, 국제거래 자유화는 IMF, WTO, OECD 등과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는 1996년 OECD가입으로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자유화규약에 따라 자유화가 많이 진전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 바,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이며 규정의 개정으로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외국환거래제도의 기동성과 신축성도 도모하고 있다.

다) 의의 및 한계

(1) 상시적 모니터링 미흡

수출입기업에 대한 외환관련 혐의거래 등 특정한 사안이 있는 경우,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통한 불법외화 거래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나, 외환거래법의 일상적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미신고상계, 제3자 지급 및 영수, 회수의문자산의 미신고, 미신고 투자 등의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2010년부터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중 40개 업체에 대한 중계무역 등 정보 분석을 통하여 환치기운영,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140건, 15,755억원 적발하였다. 또한, 기획심사를 통한 법령위반 중 외국환관련 법령위반 등의 적발 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3> 법령별 통관요건 위반 적발실적²⁵⁾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외국환거래법	7건	32건	36건
대외무역법	10건	16건	17건

한편,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8일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국제공조를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부망에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를 구축하였다.²⁶⁾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정보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외환정보 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중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은행의 외환정보팀에서 관리한다. 국세청, 관세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은 외환거래자료를 집중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 정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외환정보분석기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외국환거래의 검사권한은 외국환거래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에 위탁되어 있는 데, 특히 기업과 관련된 수출입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통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장이 수행하는 검사의 범위는 수출입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다. 다만, 용역거래·

25) 관세청 2010년 사업보고서

26) 한편 한국정부는 2011년 초 현재 43개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 완료하였고, 향후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3호(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와 제4호의 방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2) 외화유출에 무게가 실린 관리감독 제도

외국환관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외화의 유출 뿐 아니라 유입의 양 측면을 거의 동등한 정도로 규율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외국환규제의 시각은 외화자금의 유출에 비하여 외화자금의 유입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라고 하겠다.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금의 유출 측면 뿐 아니라 유입 측면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금융실명제

가) 근거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나) 내 용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거래하도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1982년 5월 ‘이철희·장영자 사건(대규모 어음사기사건)’을 통하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고,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는 등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이러던 중 1993년 8월 12일 당시 대통령에 의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제 16호가 발동되어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되었다.

다) 의의 및 한계

현재 금융실명제는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금융기관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적용은 차명계좌개설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한계는 1,199개의 차명계좌가 드러난 2008년 삼성특검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라. 기타 비자금 관련한 법률

1) 사후적 처벌과 관련

비자금의 조성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인 이외의 제3자와 같이 행해지기도 한다. 조성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조성에 따라 조세포탈, 횡령·배임, 재무제표 왜곡 표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처벌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도운 제3자에 대한 처벌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가) 당사자에 대한 처벌

(1) 조세포탈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세금 포탈로 판결 받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²⁷⁾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및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²⁸⁾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 재무제표 왜곡표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와 사업보고서 등과 첨부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²⁹⁾

2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8)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술한 바와 같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법률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외감법 제20조(벌칙):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제3자(비자금 조성 조력자)에 대한 처벌

비자금 조성 조력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3-4>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법규정

구 분	사전적 예방·적발		사후적 처벌			제3자 (조력자)
	회계시스템 감시	기업 운영 전반 감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세포탈 법 제3조	
관련 법률 조항	외감법 제2조의 2	외감법 제10조, 제15조의 3, 상법 제415조의2 등	형법 제355조, 제356조 등	횡령		재무제표 왜곡 재무제표 제162, 444조

2) 자금 세탁과 관련

가) 거래행위 위장에 대한 법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의 자금을 적법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주로 전위회사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에서 언급하고 있다.³⁰⁾

나) 자금세탁 수단 별 관련 법률

자금세탁의 수단이 되는 자산은 다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산의 경우 보통 점유자가 소유자로 간주되는 특성이 있으며(등록을 요하는 자산 제외) 부동산의 경우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무기명증권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거래가 원칙이다.

자투법 제162조(거짓의 기재에 의한 배상책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자투법 제444조(벌칙): 해당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동산을 이용한 수법

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2) 부동산을 이용한 수법

국내 부동산의 경우 등기나 세금 신고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의 의도로 차명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해외 소재 부동산 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³¹⁾에서 자본거래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3)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수법

대부분의 자금세탁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짐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으로 「외국환거래법」³²⁾,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³³⁾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³⁴⁾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³⁵⁾에서 거래 신고 등을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3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에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예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3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금융회사 등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금융회사 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일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3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금융회사 등의 신고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은닉행위와 관련된 법률

(1) 국내 자산(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은닉

비자금을 국내 자산에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2) 해외 자산

(가) 동산, 부동산에 은닉

해외 자산 중 해외 소재 동산이나 부동산을 통해 은닉한 비자금을 적발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에서 해외에 재산 은닉을 금지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³⁶⁾

(나) 금융자산 등에 은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서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일정 금액³⁷⁾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3-5> 자금세탁과 관련한 법률 요약

구분	거래행위 위장	자금세탁 수단 이용								
		보유(은닉)						거래		
		해외			국내			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
		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	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			
관련 법률 조항	범죄수 익은닉 처벌법 제3조	없음	없음	국제조세 조정법 제34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국환 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제 7,16, 17조, 특정 금융거래법 제4, 4의2, 5의2조, 범 죄수익은닉처벌 법 제3, 5조

36)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7) 2011년 6월 30일 현재 10억원이다.

3) 비자금 사용과 관련

비자금의 사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개인목적의 사용과 로비활동을 제외한 업무목적의 사용, 그리고 로비활동을 위한 사용으로 나누어 보았다. 어떠한 목적의 사용이더라도 형법의 횡령 등에 관한 조항으로 처벌이 되었다. 그러나 로비 목적의 경우 수령자 또한 처벌을 하는 법이 있었는데 「정치자금법」, 「형법」의 「뇌물수수죄」 등이 그것이다. 「정치자금법」 등의 경우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가) 비자금 사용자에 대한 처벌

비자금을 사용하는 자는 어떠한 목적의 사용이던지 간에 형법의 횡령, 배임죄에 따라 처벌이 되었다.³⁸⁾

나) 비자금 수령자에 대한 처벌

비자금 수령인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에서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었는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에서는 특정 지위를 막론하고 범죄 수익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³⁹⁾

<표 3-6>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법규정

구 분	사용인에 대한 처벌	수령인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조항	형법 제355, 356조 등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제4조

38)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술한 바와 같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법률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 :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011년 4월 4일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1년 5월에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 하더라도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근거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2) 내 용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보호대상엔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소송과정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의의 및 한계

2011년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 볼 수 있겠다. 한편 공익신고자의 적용범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열된 항목들이 기업의 불법자금 조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민간부문의 피해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한 분석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법 제4조에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언급한 합당한 근거를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고한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처리 사항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보고한 거래가 혐의거래 여부인지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받은 혐의거래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금융기관 등에 알려줄 필요가 있고, 합당한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 제34조 제1항에서 신고 대상자를 해외금융계좌 보유 당사자로 한정하였으며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는 해외금융거래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보고 대상자를 당사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통하여 보고대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장한 경우 법의 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개설한 해외계좌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미보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벌 규정은 위반자를 처벌하는데 미약하기 때문에 미보고 금액의 전액 환수 등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가)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등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제한 조항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탈세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공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기 언급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비자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 확인 시 조사의 신속성을 더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7>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한 분석

구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조항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등
조문	제1항 제1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이하 생략)	제1항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이하 생략)	제4조 제1항 (전략)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이하 생략)
현황	1. 합당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이 없어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임의 판단하는 경우 존재. 2. 기 보고한 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처리 사항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보고한 거래가 혐의거래 여부인지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애로사항 발생.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보고의무를 언급하지 않아 재산을 분할하여 보유할 경우 규정의 실효성 저하. 2. 조세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협조가 미흡. 3.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신고의무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자금세탁 여지가 존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개인 정보 취급자의 의무,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 정보의 이용) 등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제한 조항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탈세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공 협조 미흡.
문제점	1. 합당한 근거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무에 있어 혼선을 초래. 2.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아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거래에 대하여 혐의거래 여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업무 상 혼선이 발생.	1. 부부나 준비속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서 가족 간 재산 분할을 통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 가능. 2.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일 경우 관련 자료의 취합이 어려워 법 집행에 애로가 발생. 3.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해외계좌를 통해 비자금 은닉의 가능성이 있음.(※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등으로 인한 약 4천 7백억원 역외탈세) ⁴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제한 조항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자금의 경우 개인의 정보보호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곤란한 점이 존재함.
개선 방안	1. 혐의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feedback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합당한 근거에 대한 명시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임의판단 여지를 줄인다.	1. 부부나 준비속에 대하여 보고의무 규정을 명시 2.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미보고 금액의 10% 과태료 처벌보다 수위를 높여 사후 제재의 강도를 강화한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 이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개인 금융정보 자료 이용의 근거를 마련.
관련 조항	법 제5조,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49조	시행령 제9조 등

40) 2011.4.12 국세청 보도자료.,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칙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담한 탈세시도이다.

사. 검토 결과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선 방안

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기능·역할의 재정립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제대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경우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사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나) 내부통제체제 미구축 또는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제체제의 유지·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을 현저히 해태하여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모든 이사가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감시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제도 관련 개선 방안

가)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독립성 보장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는 많은 연구 사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상법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감사선임에 관한 독립 검증 기구 등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⁴¹⁾라고 규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내부감시기구의 확충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는 회계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회계를 포함하여 업무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41) 상법 제542조의12제5항

다) 감사위원 개인의 윤리의식 함양

최근 불거진 XXXX저축은행 언론 보도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 있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XX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감사 4명은 대주주의 지시를 받아 2조 3,582억 원에 이르는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 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 국장 출신인 XXX저축은행 감사 문모 씨는 8,514억 원의 불법대출, 8,336억 원의 분식회계, 682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 부국장 출신인 YY저축은행 감사 김모 씨는 2009년부터 1,561억 원의 분식회계 과정에 참여했으며 200억 원대 불법대출과 120억 원대 배임 행위를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 XXXX저축은행 감사 최모 씨도 1,0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다.’⁴²⁾ 위 사례는 회사의 업무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사가 종전 금융감독원 간부로 재직했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항이다.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상법에서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금융감독원 간부가 감사로 임명되는 사유는 전문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감사위원의 윤리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감사제도 등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3) 회계 관련 부정 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공공기관의 부패관련 신고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와 관련한 내부자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내부자보호제도에 포함될 내용은 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의 경감,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개선방안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1) 은행 내 1차 점검 강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혐의거래 보고 등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인력이 보고된 거래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현재 인력⁴³⁾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보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보고의 품질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42) 뉴스한국, 2011. 5. 6. 기사, <http://www.newshankuk.com/news/news.asp?artidno=w20110506085253n9269> 참조.

43) 2011년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인력 28명이 월 20,000~30,000건의 혐의거래보고를 처리한다.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체 분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표 3-8> 의심거래보고, 상세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융회사보고	4,680	13,459	24,149	52,474	92,093	136,282
상세분석	4,272	5,846	6,598	7,270	11,246	13,053
법집행기관제공	995	1,799	2,267	2,331	5,234	7,711
심사분석인원수	21	21	21	28	28	27

현재의 혐의거래보고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서 산출된 정보를 여과 없이 보고하는 상황이라면 거래를 보고함에 앞서 은행권에서 1차 분석검토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압축된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혐의거래 적출건수의 약 1/10정도를 자체 점검하고 그 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혐의거래의 확인 기준이 자의적인 점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상의 실무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편의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관행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업무 현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모니터링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대상 유형 및 기준을 객관화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에 대한 혐의거래 분석결과 및 조치 통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혐의 거래보고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보고한 혐의거래의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것이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거래 중 해당 금융기관의 물과 전문적 판단을 가지고 혐의거래를 추출하여 보고를 했으나,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항을 재보고 해야 할지 아니면 추후에는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및 업무특성에 관한 이해를 근거로 한 ‘정확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조치여부를 알 수 없고, 계속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파악되는 경우 업무수행의 효과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혐의거래보고건에 대한 분석 및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는 없을지라도 반복적인 혐의보고유형 및 특정혐의거래보고건에 대하여는 분석 및 조치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금융기관에 대한 분석대상 거래 유형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혐의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관세청, 검찰청 등 자금세탁거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과의 공조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의 경우 혐의거래파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새롭게 파악된 혐의거래유형 및 기준을 수시로 알려주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자체 적용한 후 순도 높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 내실화

(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운영구조를 보면 사전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하여 혐의거래 등을 파악하는 형태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는 신상품의 출현 등 환경의 변화나, 신종수법의 출현 등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시스템의 경우 구현 로직이 전체 거래 중 일정 비율을 혐의거래로 산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보고를 위한 보고를 수행하는 형식적인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증권전산과 공동구축의 개념으로 혐의거래모니터링시스템(TMS)를 구축한 증권사의 경우 시나리오분석 방안을 시스템에 반영하려면 한국증권전산을 거쳐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개선은 일어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거래를 걸러내는 금액기준 등을 변경하는 정도로 시스템 개선 운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혐의거래 모니터링은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의 운용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조건을 설정과 분석으로도 가능한 부문이 있는 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혐의거래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 감독 당국의 전문성 강화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용에 대한 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위임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⁴⁴⁾. 금융감독원에 의한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특별검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소수 있으나, 대부분 정기 검사 시 검사의 한 부문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사를 해온 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검사의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검사는 시스템의 유효성 검사라기보다는 탐문검사 정도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검사의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초기에 검사권을 가진 기관의 역량을 조기에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⁴⁵⁾

(5) 자금세탁방지 절차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제3자 검토 유도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준수가 은행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을 검사하여 혐의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금융정보분석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매 거래 당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형사처벌도 연계되는 등⁴⁶⁾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금세탁관련 금융기관 처벌사례

- 2011년 3월, 마이애미은행(Pacific National Bank of Miami)에 대하여 혐의거래를 적절히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고위험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700만불(약 7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와코비은행은 2008년 4월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이 미국 뉴멕시코 인근 국경마을에서 환전상을 이용해 자금세탁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금세탁방지 규정위반에 따른 1억4400만달러(약 1,5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2005년 12월에는 네덜란드 ABN암로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국가인 이란, 리비아 등에 대한 송금을 가담한 혐의로 8000만달러(약 8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45) 2011년도에 금융감독원은 감독총괄과 산하에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를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제도 검사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6) 미국 BSA(Bank Security Act)상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 SAR)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a. 매 1일에 대하여 \$1,000의 민사상 벌금. b. 매 위반 거래건에 대하여 \$500의 벌금. c. 고의적 위반의 경우 \$25,000 또는 그 거래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d. 15일 내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매 경과 1일당 \$10,000. e. 지속적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FDIC로부터 받을 수 있음. 이와는 별도로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있음.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 지점의 처벌사례

- 2010년 1월 외환은행의 일본 오사카지점이 불법세력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다른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이 드러나 도쿄지점과 함께 일본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03년 6월 외환은행 미국현지법인 브로드웨이지점은 미국 자금세탁 방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1백10만 불(약 12억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안은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감독기관의 검사기능을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 방안은 제3의 기관이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규제준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제3자 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벌금이 가혹한 미국의 경우 감독기관의 점검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래 뒤돌아보기 서비스 (Transaction “Look back” Analysis Services)를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고대상 거래의 유형 및 기준, 그리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비은행 금융권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방안 마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은행권은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하여,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용대상이라는 하나 운용의 수준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최근 보험이나 증권사 및 기타 제2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제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3-9>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현황

금융기관	현황
은행	은행 개별적으로 KYC(고객알기제도), TMS(거래모니터링시스템)구축 대부분 패키지솔루션 도입, 시나리오에 의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증권	공동컨설팅 진행, 일부 대형 증권사 별도구축 한국증권전산(KOSCOM)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52개 시나리오 개발) 운영 (KYC의 경우 13개사, TMS의 경우 11개사 사용)
생명보험	패키지 적용에 자체개발 병행 PF부문 보다는, 대출, 중도인출 등이 이루어지는 고객센터 위주의 관리
손해보험·카드사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 자체시스템 개량사용
저축은행	67개 저축은행 대상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 진행, 일부 개별진행
카지노	일부대형 카지노 진행, 시스템구축보다 프로세스 정립위주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담당자마저 기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겸업으로 자금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표 3-10> 2010년 8월말 기준 의심거래 건수⁴⁷⁾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계
연간누적보고건수	141,227	5,603	322	4,751	151,903
비중(%)	92.97	3.68	0.21	3.13	100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카지노 등

<표 3-11>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증권사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0.42%	0.77%	2.24%	3.68%

이런 현황의 근간에는 자금세탁방지의 준수가 고객불편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영업현장에 널리 퍼져있으며, 경영진도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또 한 가지의 형식적 규제준수 업무로 보는 의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다) ‘흐름(flow)’위주의 제도운영에 ‘은닉(stock)상태의 비자금 파악’의 개념을 부가한 제도 개선

비자금관련 기사를 보면 차명계좌가 많이 등장한다. 보험사의 경우 고객명의로 위장된 차명계좌에 비자금이 분산 예치⁴⁸⁾되어 있다거나, 출처불명의 비자금이 차명계좌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⁴⁹⁾ 등이 그런 예이다. 특히, 증권사 차명계좌의 경우 시세조정, 내부자정보이용 등 비자금의 증식에도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은닉, 또는 증식⁵⁰⁾은 이미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러한 차명계좌의 실태는 검찰의 사건 수사 시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자금세탁방지제도하에서는 눈에 띄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현재의 자금세탁제도는 거래의 흐름과정에서 특이‘거래’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7) 연합뉴스, ‘증권사 차명거래, 자금세탁보고 소극적’, 2010년 9월 19일

48) 2011년 태광산업 비자금 수사시에 검찰은 오너일가가 700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3000억원 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49) 2010년 말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시 한화그룹은 차명계좌 50여개를 제출하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으로 장기간 관리를 안한 돈이라는 소명을 한 바 있고 보도된 바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를 확인했으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 제2조(정의) 2.에서 "금융거래"를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증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법, 제4조에서는 위에서 정의된 금융거래를 보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의2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서는 일정기준의 금융자산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일정금액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하게 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념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비자금의 특성상 특정계좌에 '은닉'되어 있다가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구조는 '움직이는 시점'에 혐의거래 여부 및 고액현금거래 신고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통상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하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일시에 움직이는 경우 혐의거래로 보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장기 무거래로 남아있는 경우 등을 파악 보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을 받게 하거나 해당 특성을 가진 계좌의 경우 계좌주인을 확인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차명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주요 비자금 수사사건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나타난 자산은닉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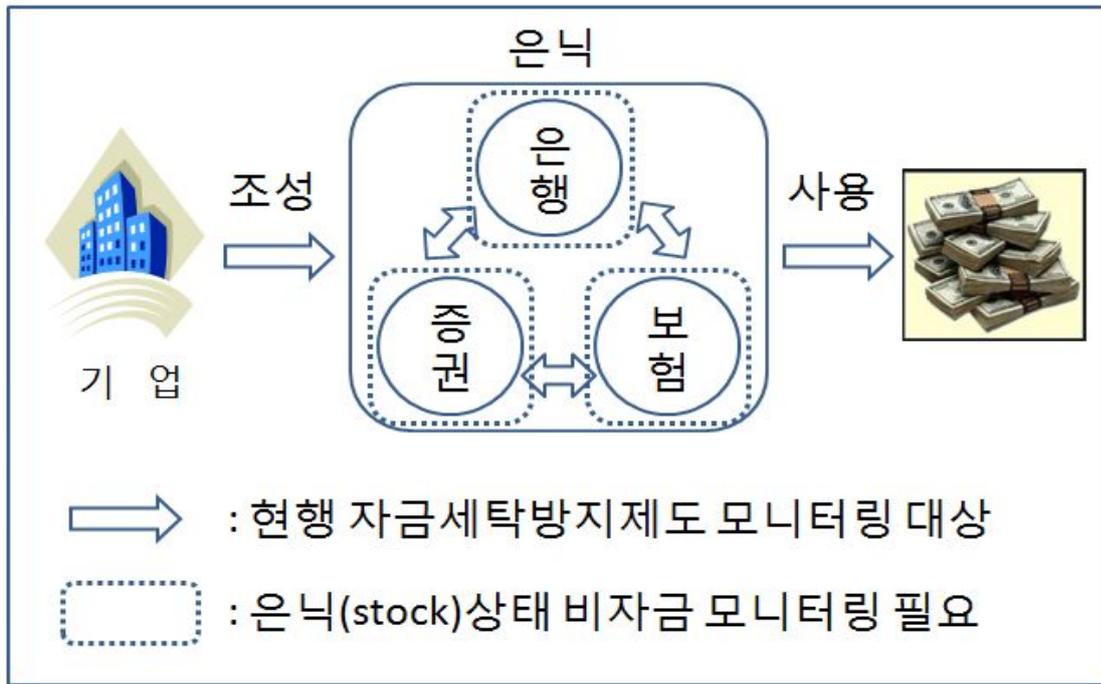
<표 3-12> 주요 사건의 자산은닉 형태

사 건	관련금융기관			차명여부	규모(추정액)	참고
	은행	증권	보험			
삼성특검(2008)	●	●		주식(전현직임원 486명)	예금 2930억 주식 4조1009억	
태광산업(2010)	●	●	●	주식(임직원) 보험(설계사115명)	보험 313억	보험의 경우 도명
신한은행(2010)	●			제일교포 4인	50억	
한화증권(2010)		●		임직원 (60여명)	300~500억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예금형태가 비자금 은닉처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은닉이 나타나며, 증권, 특히 주식 형태로 보유한 비자금의 경우 임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은닉상태의 비자금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닉상태의 비자금에 대한 점검은 초기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그 이후에는 일정기준을 새로 충족하여 점검대상으로 편입되는 자산만 추가점검을 하면 되므로 이러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량의 부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림 3-3> 은닉(stock)상태의 비자금 모니터링



라) 역외거래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

현재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역내의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환경은 기업의 국제거래증가와 맞물려 자금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하고, 이와 맞물려 외환거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외화 해외도피, 자금세탁과 관련한 중대 외환범죄 단속실적의 증가추세를 보면 2007년 253억에서 2010년 2,453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자금이 외화, 특히 달러의 보유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 것도 외환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것이다. 또한,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지난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달러로 크게 늘었다.⁵¹⁾

현재는 역외혐의거래는 관세청의 외환조사,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및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는 단발적,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51) 2011년 6월 22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재벌그룹(공기업 제외)이 설립한 해외 법인은 지난 5월말 현재 1942개로 지난해 1812개보다 130개 늘었다. 이 가운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해외 법인은 167개로 지난해 141개보다 26개가 증가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에서 외환을 이용한, 더 나아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외에서 일어나는 비자금조성 등에 대하여는 사법권, 금융감독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의 조성, 은닉 및 국내 반입에 대한 통제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국내기업 해외계열사의 관리강화, 해외 보유 자기에 대한 관리제도 및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환 거래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운영을 시작한 해외계좌신고제도는 해외보유자금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제도하의 신고대상이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금, 상장주식으로 한정되어 비상장주식, CD 등 현금등가물, 채권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는 하나 역외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제도적 초석을 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외계좌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부부, 직계존비속, 공동명의 등 명의 분산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지해외법인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할 과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는 1996년 OECD가입으로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자유화규약에 따라 자유화가 많이 진전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구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외화 입출금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실질적으로 운용상 외화반출에 비하여 외화 반입에 대한 규제는 너그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비자금규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역외에서 조성된 자금의 국내반입이 문제가 되는 바,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외화반입에 대하여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마) 미술품 등을 이용한 비현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방안 마련

최근 모그룹의 경우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미술품(골동품)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가격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자금의 은닉 및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와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2013년까지 과세제도가 이연된 상태이다. 비자금 조성, 은닉의 시각에서 본다면 과세제도의 도입여부를 떠나, 거래신고제를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제도의 실행규정 정비

(1) 혐의거래보고제 관련 개선방안

(가) 의심거래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배제 규정 개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관한 판단기준을 담당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 금융감사국(OCC)의 은행비밀법(BSA)상 자금세탁방지운영해설이 참고가 될 것이다.⁵²⁾

(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규정 수정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에 따른 보고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혐의거래보고서에서 합당한 사유를 명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⁵³⁾

(다) 혐의보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면제

법률이 선의의 보고자(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보고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 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형사책임을 면제 규정도 두어야 할 것이다. FATF의 권고에서도 선의에 의한 보고인 경우에는(if they report their suspicions in good faith to the FIU)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도록(제14조)하였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

(가) 보고대상의 다양화

외국통화를 포함한 수표, 어음, 무기명채권, 상품교환권, 당첨된 복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나) 보고 거래유형의 다양화

종전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유형뿐 만이 아니라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52) 이동수, 전게서, 293면.

53) 이동수, 전게서, 293면 참조.

(3) 고객주의의무제도

(가) 신원확인 의심 시에 대한 조치

FATF의 규정은 신원확인 의심 시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거래를 착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FATF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고객확인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 수립

고객확인제가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지침을 제정하여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금융기관에 고객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시간 내에 특정인이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인지 또는 실질적인 금융자산소유자인지 여부, 그리고 신분확인을 요하는 현금거래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 고객확인 방식을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⁵⁴⁾

5) 차명계좌 관리 및 처벌 방안 법제 보완

현행 법구조상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 대하여는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각종 모임관련 거래 등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차명거래가 많고, 선의여부를 사전적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하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협조가 없이는 범죄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이다.

사후적으로 차명계좌가 조세포탈에 이용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은닉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90%를 세금으로 물리는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상당부분이 비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목적의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 대여자나 차명계좌개설자에 대하여 계좌자산의

54) '싱가포르 통화청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5.3

상당부분을 몰수하거나, 기타 벌을 부과하는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차명계좌를 만드는 경우 명의대여자와 실소유주 양측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명(盜名)’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할 것이다.

아.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금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는 비자금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제도 등이 있었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제도, 「국세조세 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실명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각종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 등이 있었다. 또한 비자금 조성·은닉·사용 전반에 관련성이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적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①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은행 내 1차 점검기능 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혐의거래 분석결과 및 조치 통보, 금융기관에 대한 분석대상 거래 유형 제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감독 당국의 전문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절차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제3자 검토 유도 등이 있었고, ②비은행 금융권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③‘흐름(flow)’ 위주의 제도운영에 ‘은닉(stock) 상태의 비자금 파악’의 개념을 부가한 제도 개선, ④역외거래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 ⑤미술품 등을 이용한 비현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방안 마련, ⑥기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의 실행규정 정비, ⑦차명계좌 관리 및 처벌 방안 법제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4. 해외 비자금 방지 및 처벌 관련 시스템 사례

가. 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률 또는 제도 사례

1) 싱가포르

1960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 1999년에 제정된 「부패, 마약밀매 및 기타 중요범죄 수익 몰수법」 및 「돈세탁방지법」 이상 3가지의 반부패법이 있다. 동 법은 부패혐의에 관해서는 모든 대상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범죄의 개념을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홍콩

1974년 제정된 「뇌물방지법」과 엄정공서의 운영기반이 되는 「엄정공서법」이 있다.

3) 말레이시아

홍콩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기관인 반부패청의 운영 기반이 되는 「반부패청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4) 미국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법」을 통해 대부분의 고위급 공무원은 고용관계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출처, 유형 및 가액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통해 내부적 비위사안을 폭로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응징으로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다른 국가들처럼 부패방지법 하의 조항으로 있지 않고 별도의 법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 영국

영국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법 및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직자 부패감사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여 고위관리와 정치인들의 독직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정보자유법을 통해 공공영역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독일

「반부패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반부패를 위한 제재규정을 담고 있다.

7)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포상 및 보상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홍콩 영정공서의 경우 반부패활동 중에 중점 관심 분야가 부패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 창출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 등은 점차 선진국의 부패방지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시민의식의 개선은 제도 개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반부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기관 및 일반 시민의 의식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해외 부패 방지 전담 기구 사례

1) 싱가포르

가)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부패 행위조사국⁵⁵⁾

부패행위로 추정되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부패관련 공무원이 저지른 과실과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패관행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의 관례와 절차들을 점검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총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조사팀, 정보국, 행정부서, 방지 및 재조사국이 이에 속한다. 부패행위 조사국은 부패방지법을 토대로 부패혐의에 관한 모든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강력한 체포수색과 은행계좌의 조사, 피의자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 혹은 대리인의 은행장부 조사까지 포함하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부패에 대한 조사의 범위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부패관련 부정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싱가포르 부패 행위조사국은 반부패 성공 요인으로 첫째, 부패를 청산하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고,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는 부패방지특별법이 존재하였으며, 셋째, 부패 행위조사국의 부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조사권에 대한 충분한 권한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⁶⁾

(1) 기능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민원, 청원, 제보를 수집하고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공무원의 부정, 부조리 또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조사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한다. 부패행위에 대한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관행 및 절차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구조

관리(총무)부, 조사부, 자료관리 및 지원부 등의 3개 부서로 편성한다. 관리(총무)부는 부패 행위조사국의 예산 및 관리(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조사부는

55) '2008년 국가투명성 측정 체계 분석 연구',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96~99면 참조.

56) '2008년 국가투명성 측정 체계 분석 연구',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98면.

부패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자료관리 및 지원부는 부패행위조사국의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적 부패예방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직에의 임명, 승진, 장학금, 연수코스 등에 활용될 공무원의 신상에 대한 관리를 한다. 종결된 부패사건의 원인분석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분석한다.

(3) 구성원

총인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사관(CPIOs) 49명, 국장1명, 부국장2명, 국장보조5명, 특별수사관 41명, 행정직26명, 정보관리직4명, 행정 및 회계직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홍콩⁵⁷⁾

가)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염정공서

ICAC는 1972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던 홍콩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Peter Godber가 영국으로 도피하자 홍콩시민들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뇌물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조직이다. 1974년 제정된 염정공서법에 기반을 두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로 권한과 자원의 배분에서도 기타 정부조직과는 달리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ICAC는 집행처, 방지탐오처, 사구관계처의 세 부서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수사 및 법집행,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처벌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어 이들의 감시와 감독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관련 사건의 조사 및 기소, 부패의 요인이 되는 각종 법령, 제도 등 개선활동, 초·중·고생 및 시민대상의 의식개혁을 위한 부정방지교육을 담당한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에서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업무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적이다. ICAC는 부패방지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지지를 필수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3) 말레이시아⁵⁸⁾

가) ACA(Anti Corruption Agency) 반부패청

반부패청은 정의와 단호함, 성실함을 지향하고 부패제거에 전념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숙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명과 목표달성을

57) '2008년 국가투명성 측정 체계 분석 연구',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99~103면 참조.

58) '2008년 국가투명성 측정 체계 분석 연구',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105~109면 참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화 및 공고화 전략이다. 이는 반부패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국제적 반부패법 시행기관들과 대중매체와의 협력을 고양하고 반부패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장려 및 방지 전략이다. 이 전략은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규제와 법을 시행함으로써 확고한 감독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시행전략이다. 피고가 알려진 수입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법률개정으로 반부패청의 시행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1) 반부패청의 주요 기능

- 공무원 부정부패의 조사·획득·대조, 부패공무원 기소
- 부패한 공직자들의 징계에 대한 권고와 반부패 캠페인 전개
- 정책입안과 새로운 행정관리체계의 연구·평가

(2) 반부패청의 권한

반부패청은 공무원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최고검찰청 외에 수사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긴급 시 치안판사가 영장 없이 검색 및 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서류와 함께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행위의 발의를 위해 각 국(department)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승인 받는 것이 가능한 특별한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4) 미국⁵⁹⁾

가) 윤리국(O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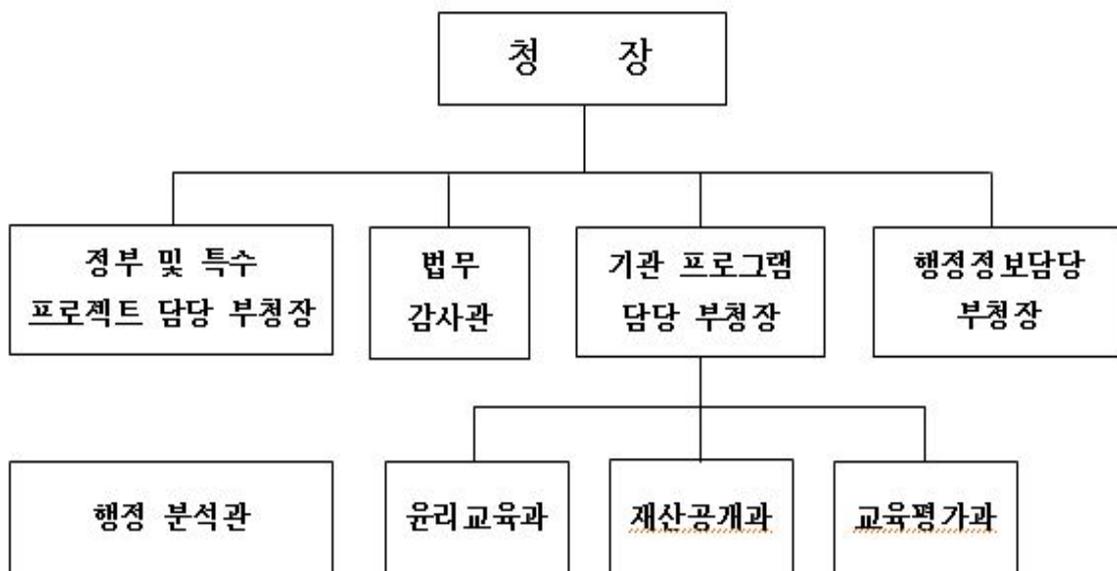
윤리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근간으로 하여 출범한 부패방지 기구이다. 윤리국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윤리국은 설치될 당시에는 미 연방인사관리국에 소속된 기구이었으나 1988년 법 개정을 통해 1989년 10월 1일부터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윤리국의 청장은 상원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59) '2008년 국가투명성 측정 체계 분석 연구',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113~117면 참조.

정부윤리법 제4장 제402조를 보면 “연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운영원칙에 대한 전반적 감독을 그 주된 임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국의 임무는 사전적인 예방 기능에 입각하고 있다. 연방정부 행정부처 관리자와 하급직원 간의 이해 갈등 예방, 행정부의 정부윤리법 준수여부 감시 및 심사, 행정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재산공개, 윤리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윤리 관련 법률, 규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윤리국 국장에게 인정되고 있는 조사의 권한은 연방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 절차의 개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국한한다.(연방행정규칙 제5장 제2386 제504조) 여기서 규정된 조사권의 행사는 청문을 요하는 공무원의 소속 정부기관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조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윤리국은 조사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감찰국과 역할분담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윤리국은 사전적 예방기능에 감찰국은 사후 조사에 그 역할이 분담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림 4-1> 윤리국(OGE) 조직도



나) 감찰국(OIG)

감찰국은 1978년 감찰국법을 근간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윤리국이 독립기구인데 반하여 감찰국은 조직상의 독립성을 결하고 있다. 감찰국은 미국의 연방정부 소속 각 정부기구 내에 설치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필요성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윤리기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반부패활동의 전문화 및 제한 설정의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문화를 위해 희생된 조직상의 독립성은 그 활동의 독립성으로 보강되고 있다. 검찰국의 주요 임무인 감사와 조사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회입법 및 행정입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검찰국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 검찰국의 감사, 조사의 개시 및 실시 또는 그 과정에서의 명령장 발부를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국법 제3조 제a항)

검찰국법 제4조에는 소속 기관의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 직권남용을 예방, 탐지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기소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국법 제2조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연방 행정부 소속 기관의 시책과 활동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장과 연방 의회가 그 정부기관의 시책과 활동상의 문제점 및 결함 등의 파악을 임무로 명시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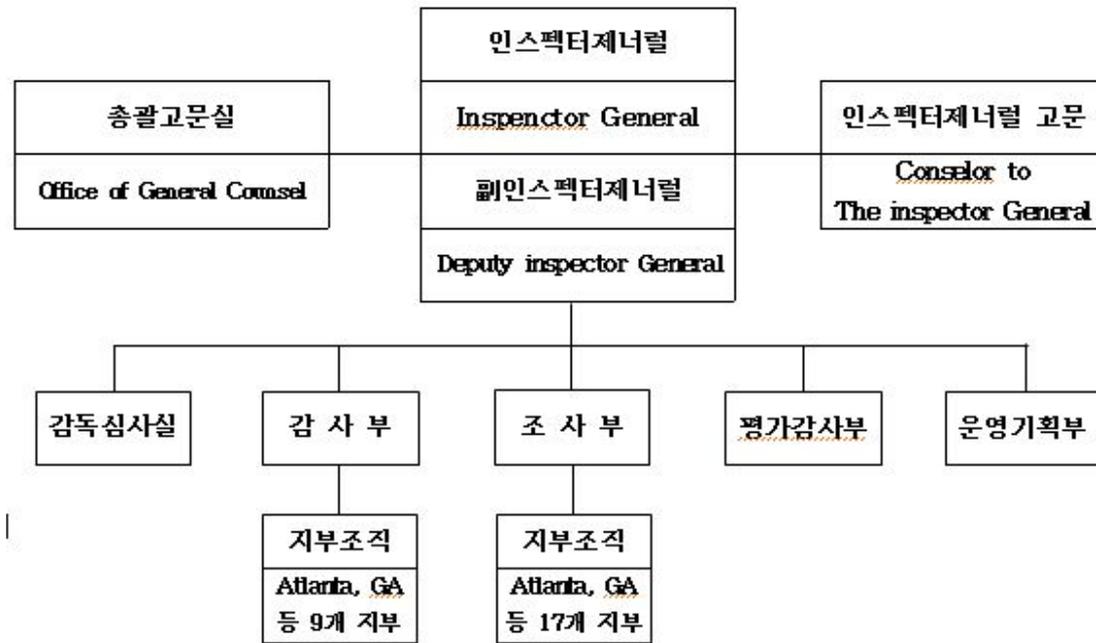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정부기관의 시책과 활동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책 및 활동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독 및 조정 ② 소속 기관의 시책 및 활동에 관한 현행 법률 및 규칙과 제안된 법률안과 규칙 등을 검토하여 그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 직권남용을 예방하고 발견 ③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 직권남용을 예방, 발견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기소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관한 운영원칙들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속 기관과 연방·주·지방정부 및 정부기관 간의 관계 설정을 감독 또는 조정 ④ 소속 기관장과 연방의회에 부정행위, 심각한 문제점, 직권남용, 정책적 결함 등에 관한 보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리국은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 대신 검찰국이 사후적인 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서로 분담하여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국의 조사권은 정보의 수집, 고발의 접수, 특정 자료의 열람권, 명령장을 이용한 강제조사 및 체포, 압수, 수색 등 기소 전 단계의 요소들을 망라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윤리 관련 행정규칙 및 법률은 물론 이와 무관한 기타 연방 법규와 행정규칙 위반 혐의에 까지 이른다. 또한 조사 대상은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검찰국의 조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시민으로부터 고발 또는 정보를 접수하고 조사가 시행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연방 형사법규의 위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모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는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될 연방검찰과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소를 전제로 한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 연방법 상 이해충돌 규정 위반 사범의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공직윤리계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FBI 등 수사기관 공조수사를 행하게 된다.

<그림 4-2> 감찰국(OIG) 조직도



다) 미국 특별검사청(OSC)

특별검사청은 독립된 독립제 연방기관이다.⁶⁰⁾ 특별검사청의 장은 변호사인 자로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5년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은 무능,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청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 (미 연방법 제5장 제12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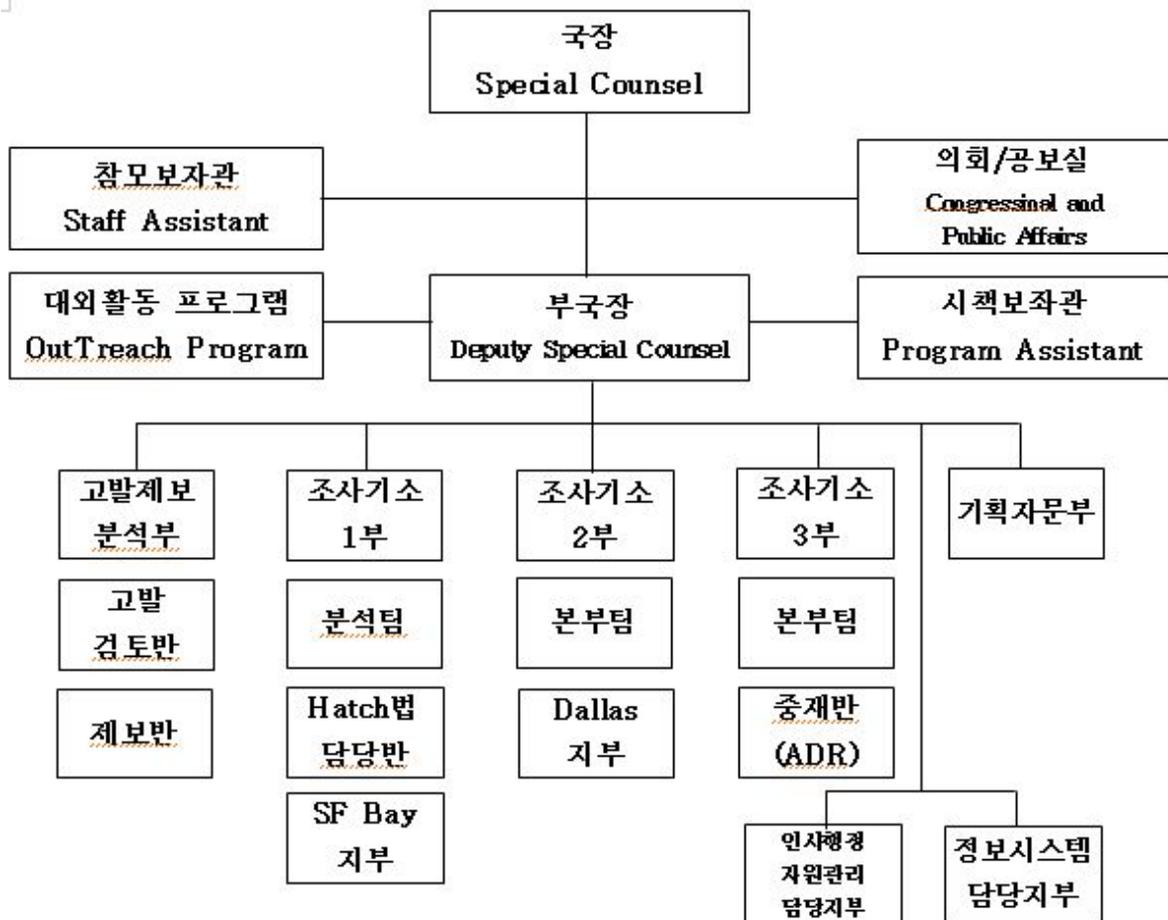
특별검사청은 부패사건의 ① 신고·접수 기능 ② 조사·기소 기능 ③ 정책기획, 홍보 자문 기능을 가진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청이 하는 주요 임무는 내부고발공무원의 보상 및 보호, 내부고발의 접수, 조사, 수사 및 기소, 내부고발통로의 보장,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법적 허용기준의 제공 및 교육, 공무원의 내부고발권 등 직무상 권리 교육, 군복무자의 공무원 재취업 및 재고용권 보장 업무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특별검사청은 연방정부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의 지원자들이 법이 금지하는 인사관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 내의 실적주의가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지된 인사관행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보복이 포함되는데 특별검사청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이나 제보를

60) 여기서 독립제란 합의제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한다.

접수하고 이에 대해 조사는 물론 실적주의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이하MSPB)에 그 조사내용을 근거로 적합한 시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제소의 책임까지 지고 있다.

특별검사청은 일반적인 법규,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한 내부고발의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의 책임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첩한다. 금지된 인사 관행 또는 정치활동의 경우 접수된 고발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개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청의 장과 그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은 선서의 주관, 진술조서의 작성, 진술서 작성 및 증거 접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 특별검사청의 장은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별검사청이 금지된 인사 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별검사청은 MSPB에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구하기 위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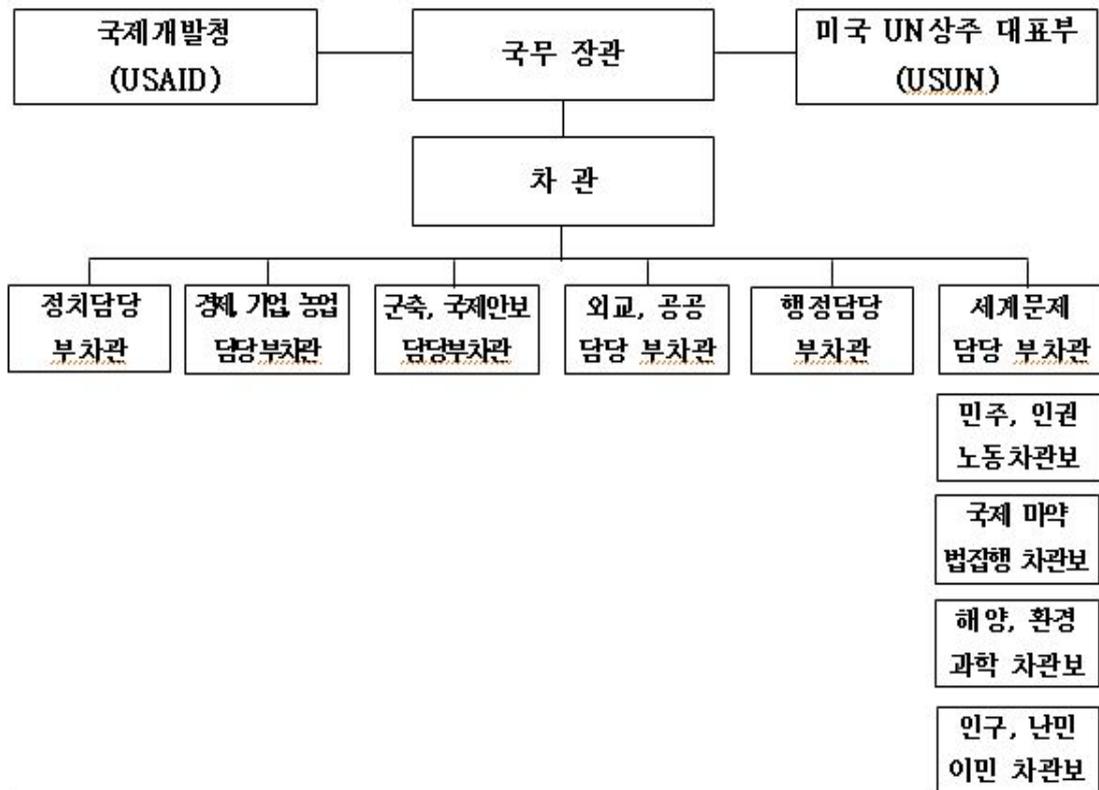
<그림 4-3> 특별검사청 조직도



라)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DOS)

미 국무부는 국정운영의 전반을 통괄하여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기 때문에 부패방지기구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국내 반부패 정책은 다루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 OECD 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국제적 반부패 라운드를 주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1977)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자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자 자신들의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이러한 법을 제정, 시행하게 하였다. 미 국무부는 해외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여건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도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OECD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1999)’ 체결을 주도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부패라운드를 출범시켰다. 미 국무부는 세계문제담당 부차관 산하의 국제마약·법집행국(The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에서 반부패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4> 국무부 조직도



마) 미국 부패방지 기관 비교

부패방지 시스템의 큰 틀은 OGE와 OIG의 연계라고 할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나 해외부패방지를 위한 OSC와 DOS가 부패방지 시스템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 OGE는 윤리교육 및 전체적인 부패방지 감독을 시행하는 사전적 예방기능이 주가 되고, OIG는 조사권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조사기능이 주가 된다. OSC는 조사권, 기소권 등 포괄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실적주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4-1> 미국 부패방지 기관 비교

구분	OGE	OIG	OSC
주요 기능 및 목적	사전적 예방	사후적인 조사	실적주의원리 보호
주요 권한	통합적 윤리기준 제공, 내부고발자 보호	사법적·행정적 수사권의 성격을 포괄	수사권, 기소권, 내부고발자 보호
법적 근거	정부윤리법	감찰관법	내부고발자보호법, 해치법
소속	행정부	연방부처	행정부(독립적)
조사권	보유X	보유O	보유O

5) 영국

가) 공직자윤리강령위원회

공무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공공기관의 도덕기준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법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중대비리조사청

사기범죄위원회 보고서가 형사재판법의 제정과 중대비리조사청의 설립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대 부정행위의 적발·수사·기소를 담당할 단일 조직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 기관은 형사재판법에 근거하여 창설된 기관으로서 35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총원 150명 규모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능을 한다.

법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위 형사재판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이다.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한해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정부기구이면서 엄격히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청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사기사건 전문 담당 기구이자, 세금과 부패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다) 왕립기소청

1985년에 세워진 독립기구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한해 사건 발생 시 검사 권한을 가진다. 1998년 내부에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였고, 조사 과정을 총괄하는 4명의 검사관이 상주하며 부패 관련 사건 발생 시 사용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라) 공익신고국

경찰과의 접촉이 발생하는 부패 관련 문제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 신고국은 경찰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명한 경찰조사관, 조사의 방향, 수사의 수행, 성명서 발표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또한 경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원은 경찰 내부수사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부패조사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6) 독일

가) 세관 부패방지국

세관 내 부패행위를 우려하여 세관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세관 업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을 2인 이상 배치시키고 있다. 8개의 지방세관 재정부에서는 부패방지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해당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하는 징계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나) 연방감사원

독일의 연방감사 관련 최고기관으로서 독일 헌법에 의해 설립되어 연방감사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9개 주 정부 감사부의 도움을 받아 연방 내 모든 정부기관들의 재무와 관련된 집행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다.

다) 예방적 범죄대책위원회

연방수사국과 주 정부 범죄수사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연 2회 개최된다. 주 업무는 연방차원에서 경찰 임무를 환기 및 조정하고, 범죄발생 동향에 대한 분석과 범죄 예방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환한다.

7) 프랑스

가) 비자금경로감시국

재무부의 예하 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 1990년 설립되어 1991년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 그리고 재정 관련 부서에서 온 총 35명의 숙련된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 20명은 비자금경로감시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관과 분석가이다. 비자금경로감시국의 핵심기능은 두 가지로서 첫째, 비자금경로와 돈세탁에 대해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비자금혐의 고소를 접수하고 이를 수사하여 의심스런 자금의 진원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비자금경로 감시국은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내용을 반드시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내의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재정 관련 기구들을 감시,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나) 재무부감찰국

공적 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검사, 수사, 회계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부내부의 규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공공기관은 재무부감찰국의 조사관이 요청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 법무부 경제재무감시국

경제부문과 재무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경제 및 금융 범죄를 퇴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법 규제 등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관, 외무부와 협력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전문적 기술을 제공한다.

라) 중앙부패방지국

수사권은 없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부패행태를 분석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조언과 조력 기능만을 가진다.

8) 시사점

해외의 부패방지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공통점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신고자 보호는 물론이고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패행위의 조사에 있어 공공부분의 부패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패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있다.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부패행위조사국은 조사의 범위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패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사항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교육 등을 중요 업무로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시아의 국가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반부패기구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반부패기구를 만들었지만, 그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는 이유가 시민의식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예방·적발 제도 운영 사례

1) 해외 비자금 조성 사례

<표 4-2> 해외 비자금 조성 사례

국가	발생연도	회사명	내용
남미	2001	텔레포니카	영업권손실 부당처리
네덜란드	2001	아홀드	영업권손실 부당처리
독일	2001	EM.TV	매출 과대계상
독일	2001	콤로드	가공회사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매출과대 계상
독일	1996	도이체텔레콤	수십억 달러의 부동산 과대평가
미국	2001	지멘스	영업권 손실 부당처리
미국	2000	필립스	전임 회장의 내부자거래(2건)
미국	2001	클럽하우스	9,000만 파운드 자산 과대계상
미국	2001	위키스	분식회계
미국	1990	드렉셀번햄램버트 투자은행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정 등 부당거래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 중형선고 시발)
미국	2001	엔론사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공금 1천억원 횡령 및 주가조작
미국	2002	월드콤	분식회계를 통한 주가 조작 및 횡령 등
미국	2003	타이코	분식회계를 통한 주가 조작 및 횡령 등
미국	2005	아델피아커뮤니케이션스	분식회계를 통한 주가 조작 및 횡령 등
미국	2009	나스닥증권거래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금융수법으로 650억불(약 84조원) 사기 등
미국	2010	베이유그룹	가짜 약속어음 발행 등 투자자 투자금액 횡령
스웨덴	1999	에릭슨	매출 과대계상, 컨설팅 비용 회계처리 의혹
스위스	2001	ABB	전임 회장에 대한 불법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
스위스	2000	홀심	슈미트하이니 전임회장의 내부자거래
영국	2001	스테이지코치	미국 자회사 손익 과대계상
일본	2007	라이브 도어	내부자거래 및 기업정보 유출 등으로 자금 조성
프랑스	1996	크레딧 리요네	부실채권 축소
프랑스	2001	르노&호스피	해외자회사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매출과대계상 (3.7억 달러)
프랑스	2001	프랑스텔레콤	영업권 손실 부당처리
프랑스	2002	비방디 유니버설	BskyB그룹의 지분처분 시 15억 유로 이익 과대계상
프랑스	2001	알카텔	분식회계

해외 비자금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조사된 26개의 사례이다. ‘2. 비자금 의 실태’에서 언급하였듯이 거의 모든 비자금은 회계부정이 수반된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회계부정의 유형에는 첫째,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 둘째, 차입 등으로 인해 유입될 자원을 횡령하고 장부에도 차입금 기록을 누락하는 방법, 셋째,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방법, 넷째, 가공의 대여금 등과 같은 자산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원을 유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해외 비자금 예방·적발 제도 사례

위에 소개된 해외 비자금 사례 대부분의 경우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적발되는 비자금 사례가 많다. 내부자 고발과 관련한 해외 제도 및 기타 비자금 예방·적발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를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홍콩

홍콩의 ICAC는 세계적인 부패방지기구이다. ICAC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구이다. ICAC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지원을 꼽고 있으며, 국민의 지원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확신과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다. ICAC는 고발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고발자의 신분을 바꿔주거나 주소지를 옮겨주기도 한다. 이는 ICAC의 운영 기반이 되는 「염정공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1) 염정공서의 성공 요인

- 최고 통치권자 또는 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부정척결의지 아래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 강력한 독립된 부정방지기구이다.
- 강력한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있다.
- 효과적인 부정방지 전략이 있었다. 제도 및 절차의 개선,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유기적 상호연계를 갖추었다.
-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 부정방지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민간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업무를 대외에 공개하였다.

(2) 최근 동향

홍콩의 공무원들은 존경의 대상이다. 월급도 일반인의 2배 이상이다. 공무원에 대한 좋은 대우가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공직사회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공무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청렴한 공직 사회는 국가 경쟁력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세계 100대 은행 중 79개 은행의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진출해 있고 매년 500여 회에 달하는 국제 전시와 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는 것도 홍콩공직사회의 청렴함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는 그 나라의 경제 자유도를 높이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홍콩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www.icac.org.hk/me) 도덕 교사들이 도덕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도덕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 간 도덕교육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場)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염정공서가 개발한 도덕교육자료들을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홍콩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도덕교사 및 전문도덕강사 약 60,000 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반부패 홈페이지 (www.icac.org.hk/teensland)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교훈적인 내용의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감화를 통한 반부패 교육을 수행한다. 염정공서가 처리한 사건내용을 교훈적인 내용의 만화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10대의 창이란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의 이상인 유명 연예인을 탐방하여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에 대한 사례를 발굴·제시한다. 게다가, 쉬어가기라는 코너를 통해 반부패 관련 격언해설 및 격언을 이용한 문제풀이(게임)등으로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나) 영국

영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배반자가 아닌 사회적 미덕을 실현하는 자로서 인식 시키려는 노력 중의 하나로 내부고발자의 사회공헌도를 인정하여 우수 내부고발자 3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한다.

다) 미국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해 독립적인 하나의 법으로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내부적 비위사안을 폭로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응징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내부고발자는 보호되고 더 이상 법적 입증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잠정적 구제를 우선 받게 된다. 또한 내부고발자들은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미국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내부고발자를 시상하고 있다.

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또한 「반부패청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비리 제의를 받을 경우 제의자를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공무원 행동수칙을 정하여 교육함으로써 비자금과 관련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1) 싱가포르 공무원 행동 수칙

(가) 해야 될 일 7가지

1. 어떤 뇌물 제안을 받을 시 보고할 것
2. 당신과 공식적 업무 관계에 있는 민간인과의 관계를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식적 관계로 한정할 것
3.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이해가 어느 기업에 관련되어 있을 시 이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
4.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외와 특혜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
5. '부패방지법' 조항, 공무원 행동수칙 및 관련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몸에 배게 할 것
6.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사와 상의할 것
7. 언제나 소속 부서에 충성하며 마음속에 부서에 최대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할 것

(나) 하지 말아야 할 일 24가지

1. 당신의 업무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해준 대가로 국민 누구로부터도 어떤 보상을 받지 말 것
2. 당신의 업무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준 대가로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지 말 것
3. 당신의 업무 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여주거나 호의를 보류한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4. 당신의 업무 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악의를 보여주거나 악의를 보류한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5. 공식 문서에 고의로 어떤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진술이나 사항을 넣지 말 것
6.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식사나 오락을 제공받지 말 것
7.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잔치에서도 선물이나 증정품을 받지 말 것
8.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주관하는 연회나 행사에 초대하지 말 것
9. 소속장의 허가 없이 다른 시간제 부업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10. 당신의 업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지 말 것

11.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감독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어떤 관련 업체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12.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
13.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이나 계약업자로부터 어떠한 제공이나 지분을 받지 말 것
14. 계약업자가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수수료나 뇌물을 받지 말 것
15.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무상 서비스(예: 교통편, 무상 수리 등)를 받지 말 것
16.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거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 것
17.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검사를 이유로,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계약업자로부터 해외여행을 제공받지 말 것
18.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장소나 계약업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업자와 공식 면담이나 협상을 하지 말 것
19.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말 것
20. 당신이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로 금전을 빌리지 말 것
21. 당신이 어느 프로젝트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계약업자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
22. 계약업자가 당신의 청구서나 할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지 말 것
23. 당신이 업무를 회피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
24.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계약자에게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같은 정부에 해가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

3) 시사점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패방지기구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패행위 시 당사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는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지도자 층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에 따른 실행을 보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패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패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5. 국제 투명성 지수와 비자금

가. 국제 투명성 지수의 종류

1)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지수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지수로서,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단일지수화한 것이다. CPI지수는 10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7점대의 경우 사회가 보편적으로 청렴하다고 보며, 3점대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부패하다고 본다. CPI는 외국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부분의 부패정도에 대해 조사하며, 부패의 주는 측면 즉, 뇌물공여 측면은 배제되고 부패의 받는 측면인 뇌물수수 측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진다.

2) BPI(Bribe Payers' Index), 뇌물공여지수

본사 소재별로 해당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영업과 관련하여 국외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은행, 법조, 회계 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수이다. CPI가 받는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라면, BPI는 주는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중역 이상의 전 세계 전문기업인이며 기업의 해외 뇌물공여 정도를 측정한다.

3)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세계부패바로미터

세계부패바로미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에 대한 부패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이다. 바로미터는 어떤 공공분야가 가장 부패한지, 부패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가족, 기업 활동, 정치)은 무엇인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한 지수이다. 조사대상은 각국의 일반대중이며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부패 경험과 인식이 조사된다.

4) GI(Governance Index), 거버넌스 지수

거버넌스 지수는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자료로서 평가 영역은 크게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이 있는데 이 중 여섯 번째 control of corruption로 부패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회계 투명성 지수와 국제투명성 지수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및 세계부패바로미터(GCB)의 세 지수 모두 해외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OECD회원국, 일본 등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국내적 인식은 오히려 더욱 부정적이어서 부패문제에 있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제투명성이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연구단체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그 상관관계가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자금 발생 빈도는 국제투명성 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국제 투명성 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

1) 부패와 밀접한 문화적 특징을 완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온정주의, 정실주의 문화와 명절 선물문화, 접대문화 등이 부패가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접대 문화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익광고도 시도해볼 수 있다.

2) 국제적 인식 변화

앞서 소개한 CPI, BPI의 경우 전문가나 기업총수, 일반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주된 조사방법이며, GCB와 GI의 경우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정도만을 측정한다. 국제적 인식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가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패정도가 감소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환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국제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패의 뿌리부터 뽑는 방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는 부패감소의 시발점이 되어 궁극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협력

우리나라는 청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UN반부패협약에 의거한 부패방지전담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업에 대한 비자금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적발되는 경우 처벌 사례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은 형량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비자금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내부고발 장려 및 부패방지 홍보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자금 관련 비리를 적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시상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장려하고 이를 투명한 기업으로 연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6) 국민 인식의 변화

국가의 정책 개선 노력에 발맞추어 비자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고발에 대해 ‘배신자’가 아닌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6. 결 론

가.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1) 제도개선

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강화

(1) 은행의 1차 모니터링 기능 강화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 인해 은행 등에서는 혐의거래 보고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고의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그에 맞추어 심도 있는 분석 건수를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은행 등에서 먼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1차 모니터링한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송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첫째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이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운영구조를 보면 사전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하여 혐의거래 등을 파악하는 형태로 되어있으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신상품의 출현 등 환경의 변화나, 신종수법의 출현 등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감독 당국의 전문성 강화이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감독당국의 실무자가 경험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초기에 감사권을 가진 기관의 역량을 조기에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제3자 검토

감독기관의 검사기능을 위임하는 형태와 규제준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제3자 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2) 정책제언

가) 회사 내부 감시 기구에 대한 제언

비자금의 회사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회계장부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부회계시스템 및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비자금 조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하다. 회사 내부 감시 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둘째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독립성 보장 및 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내부감시기구의 확충, 셋째는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의 마련이다.

나)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강화방안 마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 다른 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은행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비은행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강화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은행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은닉·보관 중인 비자금 적발 방안 도입

현재는 자금의 흐름에 치중한 적발 방법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비자금의 경우 다수의 거래를 통해 출처를 위장하기도 하지만 차명 또는 도명의 계좌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은닉 자금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라) 역외거래에 대한 감시체제 개선

자금의 국내외간 이동이 급속히 진전되었고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 등을 통한 탈세 및 자금세탁의 유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역외에서 일어나는 비자금조성 등에 대하여는 사법권 및 금융감독권 등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조성된 비자금의 국내 반입에 대한 통제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마) 미술품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수법 방지 방안 강구

거래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 과거에 미술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와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여러 요인으로 2013년까지 과세제도가 이연된 상태이다. 하지만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여 거래 실태를 양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바)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 방안 보완

현행법상으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상당부분이 비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목적의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 대여자나 차명계좌 개설자에 대하여 계좌자산의 상당부분을 몰수하거나 기타 벌을 부과하는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기타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행 규정 정비

현재 운영 중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한 보완사항으로 의심거래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배제 규정 마련되어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규정을 수정하여 합당한 사유 명시와 관련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혐의보고와 관련한 형사 책임 면제가 필요하다.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외국통화를 포함한 수표, 어음, 무기명채권, 상품교환권, 당첨된 복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여야 하고,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유형 뿐만이 아니라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객주의의무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신원확인 의심 시에 대한 조치 시 FATF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고객확인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

나. 의식개선

대부분의 비자금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단초가 된 계기는 내부자의 고발에 의한 경우이다. 외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데 비자금은 그 특성상 회사의 경영진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만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용 등에 있어서도 현금 등을 직접 사용하여 자금추적의 여지를 남기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그 출처를 알지 못하게 위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감 조치 및 신변 등의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고 내부고발자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첨부자료 및 붙임>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	82노87, 83노512(병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장부상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외부채를 변제	해당사항 없음	회사부외부채 변제	특경법 등	무죄
2	84도1109	학교 협찬금 및 기부금, 체육기금과 버스전세금 등을 학교회계에 누락하여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횡령)	상고를 모두 기각함
3	87노3573	본사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이차액수입, 운송관련수입, 보험구상금수입, 선용품대 정산차액수입 등을 누락하여 비자금을 조성	해외비밀계좌	해외지사업무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횡령죄로 처벌됨.
4	88도2211	해외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 누락	해외비밀계좌 (해외지사가 개설한 별도의 계좌)	개인적 횡령 법인 운영자금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5	89도2466	전임대표이사로서 비자금 조달원인 장부기재누락 수입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그 비자금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회사비자금을 관리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형법(업무상횡령)	상고를 모두 기각함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6	90도1092	해당사항 없음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7	90도1548	공장운영자금으로 콩을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가격을 허위 기재함	해당사항 없음	접대비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파기
8	92도147	강관가공물량 또는 운송물량 등을 실제 물량보다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관 외주가공비 또는 운송비를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는 일방 회계장부를 정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9	94도619	허위의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위 은행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를 인출.	해당사항 없음	임직원 및 고위 공무원에 판공비 또는 명절 인사 명목 금전 지급.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0	94누149	<p>1) 주식회사 XX와 거래: XXX의 지시에 따라 그 직원이 대우직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급계산서를 교부받아 결제하는 형식 등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p> <p>2) 정리회사의 자회사인 YY와의 거래: XXX의 지시에 의하여 자회사 간부가 정리회사의 매출일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고 XXX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재정담당이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인출</p> <p>3) 주식회사 ZZ상사와의 거래: XXX의 지시에 따라 경리이사가 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알미늄을 매입하고도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중간판매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비자금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회사가 정리회사 삼선알미늄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과 ZZ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의 매출을 은닉, 누락, 주식회사 XX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p>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1	96도2454	승차권 판매 대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 소비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원심판결 파기
12	96고합1228	XXXXX투자개발 주식회사의 YYY 카지노지점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적립하여 비자금을 조성	현금	1. 회사 계열사 자본금 증자시 개인 출자금으로 납부 2. 주주 개인의 대여금으로 사용	특경법 등	원심판결 유지
13	97노554	카지노의 영업수입이 많은 날을 택하여 몰래 수납실에 들어가 수납직원이 수거하여 둔 드롭박스를 열고 수표 봉치를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	현금보관	개인적 횡령 주주 개인 대여 자금	특경법 등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6,100,000,000 원에 처함
14	98가합17242	운송비의 일부를 비공식 리베이트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무역업계의 관행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며 또한 위 금원은 원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기밀비로 지출	차명계좌	경영 기밀비	상법	금 75,070,7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 부터 1999.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배상액 지급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5	98노712, 99노118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여 인출하거나 비자금으로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회사 자금난 해결	특경법 등	대표이사 징역2년, 기타 이해관계자 집행유예 및 손해배상금 징구
16	98두16347	경리담당 직원 등과 통모하여 세무신고용 장부에는 실제의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내부용 장부에서는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수익을 인출하여 예치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17	99노829	1.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미완성 공사에 관련된 공사원가 일부를 완성된 공사원가로 이전 계상하여 공사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정리하여 위 차액 상당을 회사 내에 누적시켜 보관함. 2. 지급하여야 하는 자동차 위탁판매 대금을 증액 계상하여 허위로 회계자료를 만들고 그 차액 상당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수주활동비 (접대비 등)	형법(횡령,배임)	피고인 이XX 징역3년, 피고인 이YY 징역 2년 6월, 각각 3년 집행유예, 피고인 이XX 253,000, 000원 추징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8	2000다42786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식 매각대금 보다 낮은 가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여 비자금 조성	해외 비밀 계좌 (스위스 및 싱가포르은행의 차명계좌)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19	2000구4133	할인매장부지로 취득하였는바, 회계장부에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법인세 추가 부과 등
20	2000노251 2000초79	가공의 판공비, 인출금, 기밀비 계상	차명 계좌 부동산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횡령죄로 처벌됨
21	2001고합141	공사업체에 지불한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등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징역 3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22	2001고합925	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조세범처벌법	피고인 1: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 3: 주식회사 벌금 2억
23	2001나27250	XX의 당진제철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XX그룹 회장인 소외 정XX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로 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24	2002고단7932, 8596(병합)	12월의 판매단가를 임의로 인상한 것으로 조작하고 이에 맞추어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계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식회사의외부감 사에관한법률(허위 재무제표작성·공시)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3억 원
25	2002고합534, 589,605(병합)	인건비나 중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	해당사항 없음	접대비	특경법 등	각각 징역 6월~1년, 벌금 1000만원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26	2002노1097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지출품의서 및 간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개인 용달업체에 대한 운반비 지급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마치 회사 자금이 운반비 명목으로 정상 지출된 것처럼 관련 회계장부를 조작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접대비	특경법 등	피고인 송XX 징역 1년 6월, 피고인 이XX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XXX 벌금2억원, 각각 2년 집행유예
27	2003가합16041	소외 2 회사와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계상한 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뒤, 위 피고들이 만들어준 소외 2 회사 명의의 평화은행 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되돌려받음.	차명 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1,2 10억 손해배상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28	2003고합446	마치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신청하고 그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골프클럽 회원가입신청서 등 분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사회 의사록과 근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여신거래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함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김XX 징역 8년, 피고인 이XX 징역 5년, 김XX 징역 2년6월, 라XX 벌금 500만원.
29	2003구합31692	XX리조트의 주식을 차명주주 22명의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하여 음. 위 차명 주식을 새로이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21,527,964,319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액을 취소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30	2004가합7402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재비를 기록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음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차입금 변제	특경법	횡령, 배임죄로 처벌됨
31	2004고합21	현금으로 입금된 운송수익금 일부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장부에 기재	현금 및 차명 계좌	배당금 지급 사업추진 및 후생복지	특경법 등	피고인 최XX 징역 2년 및 벌금 3억, 피고인 박XX 징역 1년6월 및 벌금 3억, 각각 4년, 3년 집행유예
32	2004고합311	1) 건설공사의 계약 및 그 기성금 지급에 있어 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2) 인건비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접대비	특경법	피고인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33	2004고합414	아파트 창호 제작,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상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피고인 3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34	2004고합421	시공기술·능력·경험이 전무한 공소의 3에게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 적정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발주하되,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 유상증자 주식 및 출자 전환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성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2년, 피고인 2,3 징역 1년 6월, 피고인 4,5 벌금 1천만원
35	2004고합474	1) 장비판매업자로부터 장비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교부받음. 2) 연맹사업에 대한 지원금 을 위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수증을 사용하여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돈을 지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XXX 징역 4년, 피고인 YYY 징역 1년 6월, 피고인 XXX는 2년 집행유예, 피고인 XXX 25,000,000원 추정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36	2004고합608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것처럼 이중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그 차액으로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회사 운영자금	특경법	무죄
37	2004고합867	섬유 원단을 구입하면서 위 종합상사에 부탁하여 구입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1야드당 0.2달러만큼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하거나, 허위로 원단을 구입하는 것처럼 수입송장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원단 구입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로비자금	특경법(재산국외도 피, 횡령), 대외무 역법 등	피고인 김XX 징역 3년, 강XX, 최XX, 김XX 징역 2년6월, 피고인 전체 각 형의 집행유예를 4년간 유예함. 각자 금 1,675,000,000 원 추징.
38	2004고합889	출판사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매출실적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횡령죄로 처벌됨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39	2004도5904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또는 일시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 하거나 허위로 과다계상된 매입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차액 상당의 금원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원심판결을 파기함
40	2005고합1169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생산공정 중 일부분을 외주가공을 주는 것처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외국환거래법	김XX 징역 3년, 남궁XX 징역 1년6월, 김XX 집행유예 4년, 남궁XX 집행유예 3년
41	2005고합119	XX사의 자금을 수령하고 쌍방회사에서 회계처리를 모두 은폐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회사 운영자금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2년, 피고인2 징역1년6월, 피고인3 징역1년, 각각 3년, 2년, 2년 집행유예
42	2005고합1213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한 가공의 지출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뇌물공여	특경법 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43	2005고합325	<p>1) 인출한 급여총액 중 직원들에 대한 실급여액을 제외한 세금 부분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당월분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후 다음달 재차 위 법인통장에서 세금납부액을 이중인출하여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매달 위 세금 납부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p> <p>2)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제일은행 법인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킴</p> <p>3) 차용금 중 면제받은 금액을 법인통장이 아닌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일부를 개인용으로 사용</p>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징역 3년 및, 횡령금 850,000,000원 배상.
44	2005고합347	<p>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p>	현금	개인적 횡령	특경법	피고인1 징역 4년, 피고인 2,3,4 징역 3년, 피고인 2,3,4 집행유예5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45	2005고합451,2005고합489 (병합)	회사의 자금을 개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예금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하고, 공소의 8 명의로 새로운 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금액을 위 새로운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시켜 이를 횡령.	차명계좌	조세부담금 조성	특경법 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6	2005고합465	1) 하도급업체를 통해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송금한 후 곧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거쳐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음 2)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금액을 차명계좌로 돌려 받아 합계 10억원의 비자금 조성 3)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명목으로 총 77억을 인출.	차명계좌 및 현금	개인적 횡령 접대비	특경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 등	피고인 박XX 징역 총 3년4월, 황XX 징역2년, 김XX,박XX,유XX 징역 1년6월, 박XX 징역2년6월, 황XX,김XX, 박XX 3년 집행유예, 박XX, 유XX 2년 집행유예, 피고인 김XX 6,000만원 추징.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47	2005고합503	소프트웨어 구입계약서 허위작성. 15회에 걸쳐 32억 4,75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법인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
48	2005고합510	허위내용의 사석납품계약서, 기성검사 청구서, 기성공사대금청구서, 외주기성내역서 등 계약 및 회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교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49	2005고합68	영업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의 58%에서 42%로 인하한 후, 공소의 1에게 위 영업수수료를 조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액의 58%를 지급하고 그 중 매출액의 15%를 수일 내에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1 징역 3년 및 벌금 5억 피고인 2 징역1년6개월, 피고인 3 징역2년 피고인회사 벌금 10억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50	2005고합702	1) 학교법인 시설공사계약 체결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계약한 금액으로 대금지급 후 차액을 반환받음 2)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용역대가를 누락시킴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51	2005고합860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허위전표를 통해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수입이자 누락	차명계좌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52	2005노1838	해당사항 없음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징역 1년 6월
53	2005노2861	계좌서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자금을 인출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항소를 모두 기각함.
54	2005노8	각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하도급 받아 시공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횡령죄로 처벌됨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55	2005도6433	펜스광고는 영업사원이 없어 영업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대상이 없으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영업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개인적 사용	형법(배임수재)	원심판결을 파기
56	2006고합1352	본·지점의 인테리어공사 등 용역 수행 업체, 자재 및 소모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용역수주나 납품 등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커미션을 수령	해당사항 없음	1.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사례비 2. 개인적 사용	특경법 등	원심판결을 파기
57	2006고합142	위 회사가 개발한 다중 온라인 접속 게임인 XX의 해외판권계약을 해외 업체들과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배 수익금을 해외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음	해외비밀계좌 (수익금 일부를 홍콩에 따로 개설해 둔 비밀계좌로 송금 받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58	2006고합474	XX화물과 운송 거래가 없음에도 화물 운송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 받음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3년, 피고인 2,3,4 징역 2년6월
59	2006고합609	허위의 운송 거래를 통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되돌려받음	현금보관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60	2006나7229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3억 3,7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상법 제399조	피고인1,2 각각 10억 손해배상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61	2006도6994	해당사항 없음	현금, 수표	해당사항 없음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62	2006노215	실제의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명목상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단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반환받음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3 징역2년 및 집행유예4년
63	2006누21537	명의수탁자들에게서 주당 6,000원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매수한 주식은 재무제표에 기장하며 매매대금으로 지출된 현금은 부외자산으로 관리.	차명계좌 부동산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법인세 부과 처분액 일부 취소
64	2007고합25	공사현장 노무비, 유류대금을 허위 또는 과대 청구하여 지급받음.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1년6월, 피고인2,3 징역 8월, 피고인1 집행유예2년, 피고인2,3 집행유예 1년
65	2007고합260	지출하지 않는 영화제작비를 허위로 기록하여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66	2007고합264	거래처인 XX중기로부터 토사처리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중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연화중기에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조카사위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음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징역 1년6월, 2년 집행유예
67	2007노13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운영자금	형법, 사립학교법, 형사소송법, 건축법, 공공기관의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피고인 1을 징역 3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68	2007노881	장례비, 수익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접대비 등 로비자금	형법(업무상횡령) 등	피고인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9	2007다25865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계상하여 위 하도급 계약들을 체결, 어음금액 결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음	현금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원심판결 파기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70	2008고단5767	1)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함. 2)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X로부터 수주한 표면처리장치 설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을 반환받음.	해당사항 없음	피투자회사로서 자금집행관련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	형법(업무상횡령) 등	피고인 징역 2년 및 3년 집행유예
71	2008고합104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급여 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채무변제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72	2008고합106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음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차입금 변제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73	2008고합114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처에 물품 내지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 3년, 피고인2 징역 2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74	2008고합151	1) 실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 상당을 거래업체로 지급한 다음 차액을 반환받았다. 2) 실거래 없이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대금을 지급하고 비자금 계좌로 반환받았다.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로비자금	특경법 등	피고인 윤XX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 피고인 김XX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 피고인 이XX 징역 10월. 김X와 이X 집행유예 2년
75	2008고합218	평일 일반인들이 골프장 이용이 끝난 시간에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수령하는 골프장이용료를 장부에서 누락	현금보관	회사 운영자금 접대비 개인적 횡령	특경법	징역 10월, 2년 집행 유예
76	2008고합342	설계용역비 및 물품구입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하고 법인세 등 세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현금보관	개인적 횡령 접대비	특경법	피고인1 징역 2년, 피고인2 징역2년, 피고인3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77	2008고합367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접대비 기타 업무 비용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 1년6월, 피고인 2 징역 10월, 각각 3년, 2년 집행유예
78	2008고합47	1) 공사비를 과대계상하여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반환받음 2) 철거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 대금을 누락시킴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징역3년, 5년 집행유예
79	2008고합482, 2008고합516(병 합),2008고합656 (병합)	공소 외 주식회사 주식 1,925,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의 약 35%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여 얻은 거래차익을 업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2 벌금 500만원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80	2008고합573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마치 물품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1	2008고합669	노무비나 중장비대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각종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	해당사항 없음	뇌물공여	특경법, 형법(뇌물공여)	피고인 각 징역 1년 6월, 3년 집행 유예
82	2008고합689	1)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명부, 급여지급 내역 등을 허위작성 2) 컨설팅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컨설팅 용역료를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피고인1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2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83	2008노2554	감정평가법인이 급여 또는 출장비 등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접대비 대출이자 지급	특경법 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 2각 징역 1년 2월
84	2008노2703	실제로 구입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에 기록함.	해당사항 없음	회사 운영자금	형법(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2를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85	2009고단1836	1)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음. 2) 협회가 지급받은 기부금을 협회에 귀속시키지 않고 누락시킴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협회 운영자금	형법(업무상횡령)	피고인1,2 각각 벌금 700만원, 200만원에 처함
86	2009고합10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 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음.	현금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 2년6월, 피고인2 징역 2년, 각 집행유예 3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87	2009고합183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의 매일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현금 및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김XX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88	2009고합203	조XX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의 허위보상인 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ZZ의 CC계좌를 마치 조YY의 계좌인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ZZZ의 CC계좌로 지급함.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횡령)	피고인 징역 3년
89	2009고합617	상가 시공업체이던 XXX의 사이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	해당사항 없음	기타 법률 위반 회피를 위한 행위	특경법 등	피고인 각 징역 1년6월 김XX와 허XX 집행유예 3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90	2009고합9	설비를 납품받은 거래처의 A/S 수요가 지속적이고 그 A/S대금수입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생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차명계좌로 A/S대금을 입금받음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거래처 로비자금	특경법, 형법(뇌물공여) 등	피고인1 징역 2년, 피고인2 징역 5년, 피고인3 징역 1년6월, 피고인 4 징역 1년, 피고인3,4 집행유예 3년
91	2009노1119	보조금 지급 과다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92	2009노3794	허위의 출장복명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출장을 한 것처럼 하거나 출장인원 또는 출장일수를 부풀려서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 횡령)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93	2009도1373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 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함
94	2009도6634	자문료 형식으로 매월 공소의 6 주식 회사의 비자금 967만 원(자문료 1,000만 원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1에게 송금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배임증재 부분에 대해 원심 파기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95	2010고단3669	체육용품비, 물품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집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를 횡령함.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접대비	형법(업무상횡령)	피고인 징역 6월
96	2010고단4459	1) 수령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착복. 2) 거래처와 공모하여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자금 조성.	현금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횡령)	피고인 백XX 징역 1년, 피고인 정XX, 백XX 징역 8월 피고인 정XX, 백XX 2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
97	2010고합108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 정XX명의로 YY은행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물품 구입 대금을 지출하는 것인 양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안XX, 정XX, 장XX을 징역 2년 또한 3년간 집행유예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98	2010고합1164	<p>1) 각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금액 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고, 공사비 지출시 위 이중계약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돌려 받음.</p> <p>2) 가공노무비 및 가공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조작.</p> <p>3) 하도급업체로부터 산재보험료, 쓰레기처리비, 물가연동상향조정분 등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p>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징역 3년, 5년집행유예
99	2010고합1290	<p>1) 대학 공사비 관련하여, 공사업체들과 공모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돌려받음.</p> <p>2) 외국인 학교에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 유류구입비 가공계상.</p> <p>3) 강XX의 아들 과외교사들과 가정부 급여를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p>	해당사항 없음	<p>1)개인적 횡령</p> <p>2)수입액을 다른 기업실체에 비공식적으로 전출</p>	특경법, 사립학교법	강XX 징역 3년6월, 정XX 징역 2년, 정XX 3년 집행유예.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00	2010고합165	정상적인 거래를 해오던 업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들 업체에게 정상적인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법인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음.	차명계좌	로비자금 회사 운영자금	특경법, 형법(배임증재) 등	피고인1,2 각 징역 2년, 피고인 3,4 징역 1년 6월, 피고인 5 징역 8월, 피고인 1,2 집행유예3년, 피고인 3,4,5 집행유예 2년
101	2010고합1664	1) XX무역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건네받음. 2) 종업원 급여를 인상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3) 중국의 거래업자와의 수출대금을 조작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출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음. 4) 직원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지출한 것처럼 XXX 급여담당 직원 조XX 명의의 XX농협계좌로 별도로 입금하여 관리.	차명계좌	관계사 자금지원 개인적 횡령	특경법, 외국환거래법	피고인 징역 3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02	2010고합206	<p>1)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거나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줌.</p> <p>2) 실제 지급받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해주고 식대 및 회식비 명목으로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받음</p> <p>3) 마차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함.</p> <p>4)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하게 함.</p> <p>5) 장비를 빌려 사용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함.</p>	해당사항 없음	현장운영자금 (접대비 등)	특경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	피고인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03	2010고합213	협력업체와 납품물량 증가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현금 및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형법(배임수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피고인 XX호 징역1년, 피고인 이XX호는 2년 집행유예,
104	2010고합291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사례금 수령.	차명계좌	연구비	특경법 등	피고인 원XX 징역 5년, 피고인 백XX은 무죄
105	2010고합317	설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거래대금 보다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통해 부풀린 대금을 XX에게 송금해 준 다음 동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 받음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징역 2년 및 3년 집행유예
106	2010고합376	1) 커피숍 수입금, 납골당 판매대금, 장례용품 판매대금 등 수익금을 누락 2) 기존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 거래대금 과대계상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1)개인적 횡령 2)로비자금	특경법 등	피고인1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2,3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07	2010고합38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차명계좌인 XXXX재단 전직 지원 서XX 명의 XX은행 계좌로 송금	차명계좌	1)로비자금 2)접대비 3)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피고인 정X 징역 3년 6월, 피고인 정XX, 이XX, 김XX 각 징역 1년6월, 피고인 이XX 징역 3년. 정XX 4년, 이XX, 김 XX 3년 집행유예
108	2010고합454.	허위의 급여처리, 매입대금 과다계상 수법, 매출누락 수법, 1mm 강판 매출을 계약하고 실제로는 0.95mm의 강판을 공급 등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1)개인적 횡령 2)금품로비	특경법 등	피고인 한XX 징역3년, 피고인 성XX와 이XX 각 징역 1년6월 한XX 4년 집행유예, 성XX, 이XX 2년 집행유예 피고인 이XX 48,497, 110원 추징.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09	2010고합492	1)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 2)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주비를 가공계산.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3년 집행유예, 신XXX은 집행유예
110	2010고합50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 금원을 매출 원가로 허위 신고하여 비용을 허위계상 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차명 계좌로 돌려받음	차명계좌	1)개인적 횡령 2)로비자금	특경법 등	조XX 징역 3년, 박XX 징역 1년 6월, XX기업 벌금 1000만원, 이XX 징역 년 및 벌금 2160만원, 노XX 징역 4년, 최XX 징역10월 및 벌금 1500만원, 조XX 5년, 박XX 3년, 이XX와 최 XX 2년, 노XX 1년 집행 유예, 임XX 선고유예 및 벌금 200만원.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11	2010고합515	<p>1). 피고인들의 100% 출자로 설립된 장례대행회사에, 기존의 XX상조의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당초의 상품금액의 약 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탁 수수료를 지급.</p> <p>2) 고객감동센터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음.</p> <p>3). 장례지도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는 보증금 등을 김XX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다가, 사적으로 사용함.</p> <p>4) 상조회원 모집 담당 설계사들의 신청을 받아 설계사수당을 50%할인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전산상으로는 마치 설계사수당 100%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p> <p>5) 피고인 고XX의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 수당을 지급하여 회사자금 횡령.</p>	차명계좌	<p>1)배당금 지급</p> <p>2)개인적 횡령</p>	특경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	피고인 박XX징역 4년, 피고인 고XX 징역 2년

순 번	사건번호(출처)	구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12	2010고합758	1) 공사계약 후 발주처에서 하청업체에 직불방식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음. 2) 퇴직자 및 다른 회사 소속 기술자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송금한 후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현금 및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형법(업무상횡령)	피고인 주XX을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집행유예 5년 피고인 곽XX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집행유예3년 피고인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
113	2010노1023	판매수입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114	2010노289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급여 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115	2011고합11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급여 계상 및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음.	해당사항 없음	채무변제	특경법	배임죄로 처벌됨

순 번	사건번호(출처)	조성내역	은닉내역	사용내역	처벌근거법률	판시 내용 요약
116	2011고합6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급여 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117	2011고합89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급여 계상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횡령죄로 처벌됨
118	광주 지방검찰청 home page.	1) 이미 완료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음. 2) 전체 시주금의 약 30%를 기재 누락. 3) 문화재 수리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명의만 빌린 채 직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림 4) 사찰 관람료 누락	차명계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횡령죄로 처벌됨
119	서울 지방검찰청 home page.	송전공사비(39억6천만원)를 47억3천만원으로 부풀려 제시하는 대신, 공사회사를 추천하고 리베이트 수수.	해당사항 없음	개인적 횡령	특경법 등	횡령죄로 처벌됨

<붙임> 1

다음은 대검찰청 실무속보 제200호 1999. 3. 31에 실린 내용이다. XXX그룹의 XXX 회장과 (주)XXX 전 사장 XXX은 (주)XXX 고문 XXX과 공모하여, 1996년 6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미국령 바하마 소재의 유령회사인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였고, 사하 공화국의 ‘골드스팍’사에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조흥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으로 미화 2,829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1억 8,570만 달러의 수출금융을 편취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흥은행을 통해 체이스맨하탄은행 뉴욕지점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이스맨하탄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의 2,484만 2,800달러를 송금하였다. 총 9회에 걸쳐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 계좌로 1억 6,592만 달러를 송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그 후 1998년 4월부터 12월 사이 (주)XXX이 조흥은행 등의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수출금융을 변제하지 못하자 XXX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가 변제 독촉을 받았고, 자신의 개인재산을 보전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ZZZ에서 (주)XXX에 8회에 걸쳐 아무런 담보없이 1억 8,237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결국 (주)XXX과 XXX 회장 자신은 상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주)ZZZ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⁶¹⁾

<붙임> 2

대검찰청 실무속보 제210호 2000.1.5 반 부패 특별 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1997년 6월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유령회사인 자회사 KALF를 설립한 후, 1997년 6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 14대 구입대금을 차입하여 KALF 명의로 구입하였다. KALF는 항공기 리스 구매 시 리스기간 동안 차입금을 분할 상환한 후 만료 시 항공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금융리스 형식으로 구입하고 대한항공은 KALF로부터 임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은 엔진의 제작사인 미국 P&W사로부터 엔진 장착의 대가로 받을 리베이트 상당액을 KALF가 취득할 항공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 8,400만 달러를 KALF에 이전시켜 외화를 유출하였다. 대한항공은 1996년경 미국 보잉사에 지불한 항공기 구매 선금금 중 6,000만 달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KALF가 취득한 항공기 3대의 구입 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외화를 유출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 1998년 7월 대한항공 소유의 중고 항공기 10대를 KALF에서 금융리스하는 조건으로 외국 리스회사에 매각하면서 시가의 70%에 매각하여 30%에 해당하는 1억 9천만 달러의 상당액을 KALF에 이전시켜 외화를 유출하였다.⁶²⁾

61) 안형도·윤덕룡,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2003. 12. 대외정책연구원, 211면

62) 안형도·윤덕룡, 전제서, 214면

<참고문헌>

- 관세청, “2010년 사업보고서”.
- 구회근,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기업소송연구, 2005.
-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국가투명서 측정 체계 분석 연구”, 2008. 12.
- _____,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8. 11.
- 김정규, “자금세탁의 현황과 대응방안”, 『대학원논문집』 제34집,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5. 2.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08년도 연차보고서”, 2009. 8.
- _____,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10. 11.,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2011. 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2003. 12.
- 서명수, “법인의 비자금과 횡령죄, 형사재판의 제문제” : 송계 신성택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형사실무연구회, 1998.
- 손일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9. 12.,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박사학위 논문.
- 이동수,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1집, 2010. 11..
- 이복숙,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품질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2009. 8., 전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세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이익의 질적 속성”, 2008. 8.,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한진, “자금세탁방지제도로서의 혐의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행정법연구, 2006.
-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제도의 선진화”, 2007. 12.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싱가포르 통화청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1995. 3.
-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회계검사 및 결산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1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2002. 12.
- _____,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계”, 2003. 12.
- _____,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2003. 12.
- _____,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2009. 12.
- _____,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2004. 12.
- APG, 2001-2002. Annual Report.
- FATF, 2002B, FATF Report on Money Laundering Typologies. 2001-2002.
- OECD : <http://www.oecd.org/>
- UN : <http://www.un.org/>
-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http://www.unodc.org/>
- US Department of State(DOS) : www.state.gov/
- World Bank : <http://web.worldbank.org/>

